

광등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시켜 두고, 김자술, 김남태, 의경 이치형은 차내에서 대기하고, 박재환, 박윤호, 고재풍 등 3명은 경찰차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문근무를 개시하자, 김삿갓 시비로 올라가는 층층대에서 고사를 지내러온 사람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놓았던 3~4대의 차량과 데이트족의 차량 3~4대가 주변에서 있다가 떠나버리고 그 이후 여러 대의 차량이 일시 정지하였다 가버렸으며, 당시 그곳은 위 차량 5~6미터 후방 좌측 공원감시소 부근 벚나무의 25미터 높이에 우유빛 백열구 전등 1개(100볼트 110와트)가 켜져 있어 그 주변은 비교적 밝은 상태이나 검문차량을 세워둔 장소에서 10여 미터의 거리가 있어 차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기에는 어두운 상황이었다.

0. 자가용 승용차, 남녀가 탔거나 여자만 탄 택시 등 택시강도의 소지가 적은 차량은 검문없이 통과시키고 택시강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남자만 탄 택시를 주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여 동일 22:12경까지 약 10여대의 택시를 검문하였음. 22:12경 광주 시내에서 무등산장 방면으로 지나가는 광주 4과4864호(대광택시 운전사 이재민 당 33세)를 박재환이 신호봉으로 정차시켜 검문 경찰관임을 고지한후, “검문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차안을 들여다보면서 피검문자(이철규)에게 “신분증 좀 봅시다”라고 하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박재환은 택시 뒤쪽으로 돌아가 열려져 있는 우측 차문에 얼굴을 대고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이요?”라고 물어본바 “전남대학교 학생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때 고재풍이 “어디 사는 누구요?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십시오”라고 질문하자 이철규가 택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택시에 기대서고, 고재풍이 이철규의 몸을 손으로 더듬어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쇠소리가 나므로 꺼내달라고 하자 피검문자가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보이므로 확인후 놓게 함.

0. 계속하여 고재풍이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하라고 하자 이철규가 “이중규, 1966. 5. 6. 생”이라고 대답하여 검정짜인펜으로 수첩에 받아쓰고 있을 때 이철규는 자신의 이름은 아명이 “이중규”이고 호적상 이름은 “이명규”라고 하여 고재풍이 “중”자를 두줄로 긋고 그 옆에 “명”자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1661416”을 수첩에 기재할 무렵 김남태가 검문차량에서 내려 무전기를 손에 들고 택시 있는 곳으로 다가가 택시기사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택시를 앞으로 빼라고 하여 택시를 우측 약 3m 전방으로 정차시킬 때 박윤호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고재풍이 김남태에게 수첩을 보여주면서 신원조회를 한 번 해보라고 하자 김남태는 눈이 어두워서 못보겠다고 하여 약 3m 떨어져 있는 택시 앞 라이트 부근으로 박윤호, 고재풍, 김남태 등이 함께 가 택시 앞 차폭등 불빛에 수첩을 내놓고 몸을 숙여 고재풍은 김남태에게 인적사항을 읽어 주고, 김남태는 북부서 상황실로 무전연락을 하였으며, 당시 북부서 상황실에서는 의무경찰 송재명이 무전연락을 받고 컴퓨터 조회를 하고 있었음.

0. 이 때 택시기사는 검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타코미터기 작동을 정지시키며 김삿갓 시비 쪽 도로가로 걸어가서 다리운동 등으로 몸을 풀고 있고, 이철규와 순경 박재환은 원래 검문하던 곳에서 서성대고, 고재풍, 김남태, 박윤호가 택시 앞 차폭등 불빛에 고재풍의 수첩을 비추어 가며 북부서 상황실에서 무전연락을 하느라고 감시가 소홀하자, 22:16경 이철규가 그 틈을 이용하여 택시있는 쪽으로 천천히 약 7~8보 가량 걸어 가다가 갑자기 취수탑 쪽으로 뛰어 도망가기 시작하여 박재환은 그를 보고 약 15미터 뒤에서 “도망친다 잡아라”고 소리치며 추적하기 시작하고 박윤호, 고재

풍 순으로 그 뒤를 이어 15~20미터 간격을 두고 추적하기 시작하고, 김남태는 검문차량으로 달려가 의경 이치형에게 “도망친다 따라와라”로 소리치면서 무전기를 손에 든 채 뛰어갔으며, 택시기사 이재민은 박재환의 외침소리를 듣고 그의 택시를 운전하고 쫓아갔으며, 의경 이치형은 김자술과 같이 도주방향과 반대로 서 있던 검문차량을 돌려 추적하기 시작하였음.

0. 박재환은 수원지 관리인 집을 지날쯤 날이 어둡고 도로가 구부러진데다가 우거진 숲으로 시야가 가려 이철규를 놓쳤다가 뒤따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앞으로 도주하는 이철규를 발견하고 계속 추적, 삼거리에서 약 170미터 상거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므로 박재환도 이철규가 뛰어 들어간 산속으로 뒤따라 들어가고 박윤호, 고재풍도 뒤따라 각각 산속으로 추적하였음.

0. 그때 번호미상의 승용차는 이철규를 추적하는 김남태, 고재풍, 박윤호를 추월한 후, 박윤호가 산위로 추적을 시작할 무렵 잠깐 멈추었다가 바로 진행하여 갔고, 택시기사가 이재민은 삼거리로부터 약 170미터를 진행하여와 박윤호의 뒤를 따라 막 산으로 오르는 고재풍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정차하였고, 그때 맞은편 청옥동 쪽에서 번호미상의 승용차 1대가 잠시 정차하였음.

0. 김자술은 그때서야 그곳에 도착 검문차량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형사들 어디로 갔오”하고 물어 그가 가리켜준 산위로 4~5보 오르다 어두운 산길에서 미끄러져 우측 하퇴부 부분 파열상을 입고 “아이고”하며 땅에 주저 앉자 검문차량보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하였던 김남태는 “반장님, 왜 그러요, 내려갑시다”하며 부축, 산을 내려와 김자술은 검문차량에 다시 승차하였음.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해와 잠시 서있던 승용차는 삼거리 방면으로 지나가고 검문차량에 오른 김자술이 김남태에게 “산을 올라가 형사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자, 김남태는 다시 산속으로 약 10여미터 들어가다가 마침 본서 지령실로부터 컴퓨터 조회결과 불발건통보를 받고, 어두워 동료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는 다며 곧바로 하산. 22:26경 김자술은 견디기 어려운 다리 통증으로 김남태에게 “택시기사와 같이 있어, 나 약좀 사러갔다 올께”라고 말하고 검문차량을 타고 청옥동 마을쪽으로 갔음.

0. 잠시후 택시기사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지 제방쪽으로 갔다가 차를 돌려 김남태 혼자 서성대고 있는 산속 도주로 입구로 되돌아와 잠시 정차하여 김남태 보고 “아직 못 잡았느냐”고 묻자 김남태가 못잡았다고 하면서, “돈 받기는 글렀으니 일찍가서 돈이나 버시오”라고 하자, “고생하시오”하며 시내쪽으로 갔음. 그 뒤에도 그곳에 서있던 김남태도 얼마 후 걸어서 검문 장소인 삼거리에 이르러 공원감시소 앞에 서 있었음.

0. 한편 검문차량을 타고 파스를 사러간 김자술은 청옥동 마을 입구의 구멍가게에서 1,00원을 주고 대일시프파스 2매들이 1갑을 구입한 후, 23:32경 구멍가게를 출발, 22:34경 김남태가 기다리기로 약속한 산속 도주로 입구에 왔으나, 김남태가 없으므로 삼거리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22:35경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와 있던 김남태를 만났음. 그때쯤 김자술은 수원지 취수탑 방면에서부터 진행하여 와 수원지 관리사 옆 커브길에서 정차하고 있는 소형 군용짚차를 발견하고, 운전사에게 “무슨 차량이냐”고 묻자 그 짚차 운전자는 “군용 차량인데 인사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한 후, 운전의 경 이치형이 검문차량에서 내려 “검문받던 사람이 도망갔는데 손전등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하면서 서로 제대가 얼마 남았느냐고 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육군 상사 공상수 등 3명과 민간인 1명이 청암교를 건너와 군용차량을 타고 청옥동 방면으로 출발하였음.

0. 박재환은 처음에는 이철규의 모습을 보고 추적하였으나, 어두운 산 속에서 이철규를 놓쳐버리고 좌측 산기슭에는 소나무 잡목이 우거졌을 뿐 아니라 뒤엉킨 숲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박윤호는 박재환의 뒤를 따라 산으로 뛰어 올라가 박재환을 추월하고, 고재풍은 박윤호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며 박윤호와 “어디, 어디”, “여기, 여기”하는 방법으로 서로 묻고 답하면서 서로의 위치와 방향을 알리며 노씨 묘쪽으로 뛰고, 먼저 산 입구 도로지점으로 부터 약 105미터 떨어진 노씨묘 상단부분에 오른 박윤호는 지쳐 그곳에 주저앉고 곧이어 고재풍이 노씨묘 부근에 이르자 박재환도 바로 노씨 묘에 도착하였음.

0. 22:20경 박윤호는 박재환, 고재풍이 함께 노씨 묘쪽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좌측 산길을 따라 뛰어가고, 박재환, 고재풍은 박윤호를 뒤따라 갔으며 모두 논두렁을 거쳐 약 120미터 상거한 건너편에 이르러 박윤호가 그곳 산 속으로 오르자 뒤따라온 박재환은 “아이고 더 이상 못가겠다”고 말하니 박윤호는 “이제 형님은 밑으로 내려가시오”라고 말하면서 북쪽 산속으로 올라가고, 고재풍은 박윤호를 뒤따라 올라가 위 산중턱에서 만났음. 22:30경 박재환은 혼자 논가 길을 따라 도로쪽으로 내려오다가 도로에서 약 60미터 상거한 길가 바위에 앉아 잠복하고, 박윤호, 고재풍은 계속 산속을 오르다 취수탑 불빛을 보고 하산하였음.

0. 22:35경 하산한 박윤호, 고재풍이 수원지 취수탑 정문쪽으로 걸어오자 수원지 취수탑에 있던 청원경찰 홍성하는 고재풍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자, 박윤호, 고재풍은 취수탑으로 들어가 물 1컵씩을 마시며 “택시강도 용의자 한사람이 산으로 도주하였는데, 혹시 순찰 중에 젊은 사람이 나오면 잡아주시오”라는 부탁을 한 후 박윤호, 고재풍, 청원경찰 홍성하, 이행민이 함께 취수탑에서 도로로 약 60미터 가량 삼거리 방향으로 가던중, 때마침 삼거리쪽에서 김자술, 김남태를 태우고 취수탑쪽으로 오고 있는 검문차량을 만나 22:44경 검문차량에 함께 승차하였음.

0. 22:45경 검문차량이 수원지 제방 부근을 통과하면서 김자술이 박재환 형사를 못 보았느냐 물으며, “박재환 형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하면서 운전의경 이치형에게 “차내 방송마이크를 달라”고 하니가 마이크줄이 짧아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운전수 옆에 있던 김남태가 마이크를 들고 군인관사쪽으로 가면서 “박재환 하산하시오, 박재환 하산하시오”라고 약 5회 방송하고 군인관사 입구 삼거리에서 차를 돌려 산쪽을 향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시 약 5회 방송하고 다시 삼거리쪽으로 서행하면서 계속 약 5회 정도 “박재환씨 하산하시오”라고 방송을 하면서 청암교 삼거리쪽으로부터 약 270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송을 들은 박재환이 산속 잠복장에서 손전등으로 신호하는 것을 반견하고 차를 정차시킨 다음 김남태, 박윤호, 청원경찰 이행민이 하차하여 김남태, 박윤호, 청원경찰 이행민 순으로 박재환이 잠복하고 있는 잠복지점을 향하여 약 10미터 갔을 때 청원경찰 이행민은 다시 돌아와 차 밖에서 서있고(당시 검문 차량안에는 운전의경 이치형, 그 뒤 2번째 좌석에 김자술, 수원지 방향 차창쪽 열어놓은 출입구의 뒷좌석에 청원경찰 홍성하, 세 번째 좌석에 고재풍이 앉아 있었음)

0. 김남태, 박윤호는 박재환에게 접근, 내려가자고 하니 박재환이 “여기에 잠복하고 있으면 내려올지 모르는데 다 들려 버렸다”고 하면서 “이젠 틀렸으니 내려가야겠오”하고 하면서 그 지점까지 올라온 김남태, 박윤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음. 22:56경 차안에 앉아 있던 청원경찰 홍성하와 운전의경 이치형이 수원지 다리 청암교 부근에서 “악”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청원경찰 홍성하가 바로

이어 들려온 “퐁당”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하차하여 그경 산속에서 내려와 검문차량 우측 뒷편에 서있던 청원경찰 이행민에게 저 소리를 들어보라고 알려주는 순간 “어푸 - 어푸”하는 소리가 연이어 나고 이를 이행민도 들었음.

0. 그경 박재환, 김남태, 박윤호가 산에서 내려와 검문차량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이행민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사람이 빠진 것 같은 소리가 다리쪽에서 들렸으니 빨리 가보자고 독촉하여 빠른 속도로 삼거리 방향으로 출발, 22:57경 삼거리에 도착하여 이행민, 홍성하와 경찰관들은 하차하고 운전의경 이치형은 쌍라이트를 켜 방향을 세 번 바꾸면서 청암교 아래쪽을 비추고, 박재환, 김남태는 10여분만에 걸쳐 후레쉬로 위 다리 아래쪽을 비추었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검문차량은 다시 삼거리 쪽으로 되돌아가고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는 위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후레쉬로 수면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 위로 올라 왔음.

0. 23:20경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가 아무 것도 못 보았다며 삼거리쪽 검문장소 방면으로 오자 그곳에 있던 김자술, 박재환이 수원지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조금전까지 볼 수 없었던 불빛이 보인다면서 그곳에 가보라고 말하여 23:30경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는 불빛쪽으로 향하여 위 다리를 건너가고 23:33경 검문 경찰관 5명 청원경찰 2명이 위 다리 건너 우측 숲을 거쳐 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광주 시내 전망대 쪽으로 출발하여 검문장소를 떠났음.

0. 23:35경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가 앞서본 불빛 쪽으로 다가가 그때 수원지에서 주낙을 하고 있던 김현빈, 김오빈에게 조금 전에 다리쪽에서 ‘퐁당’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묻자 낚시꾼들은 듣지 못했다고 하였고 청원경찰 이행민이 그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낚시꾼 김현빈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인적사항을 적으려 할 때 주민등록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려 이행민이 그들을 보호하는 동안 홍성하는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 삼거리쪽으로 갔으나 경찰관들이 이미 철수하고 보이지 않으므로 취수탑으로 돌아가서 청옥동파출소에 신고하였음. 그경 검문경찰관 5명은 전망대를 거쳐 24:00경 효죽파출소 동료들에게 검문중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놓쳤다고 투덜거렸음.

#### (4) 사체 발견과 검시 과정

0. 1989년 5월 10일 11:30경 광주시 북구 청옥동 133번지 소재 제4수원지 관리소 옆 청암교 다리 위에서 수원지 관리인 최왕균이 관리소에서 사육하는 개가 물가에서 요란하게 짖는 것을 목격하고 내려가 본즉, 청암교로부터 약 76미터, 관리소쪽 물가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수심 약 70센티미터 지점의 수면에 얼굴을 위로 향한 모습으로 떠있는 변사체를 발견하였다.

0. 최왕균은 즉시 관리소에서 인터폰으로 수원지 취수탑에 있던 수원지관리 청원경찰 나종주에게 연락을 하고, 나종주는 11:45경 북부경찰서 및 청옥동 파출소에 전화로 변사체 발견신고를 한 후 청원경찰 이행민과 같이 변사체 발견 장소로 갔다.

0. 12:00경 청옥 파출소장 경위 정왕기, 순경 천대표, 이환기가 변사체 발견장소에 도착, 변사체를 손으로 인양할 수 없어 최왕균이 관리소에서 가져온 길이 약 154.5센치의 쇠갈퀴에 나종주가 길이 약 192센치의 막대기를 전선줄로 묶고 있던 중 12:15경 북부경찰서 형사계장 경감 주춘근, 당직형사

반장 경위 김자술이 도착하였다.

0. 순경 천대표가 막대리에 연결된 쇠갈퀴(길이 약 2.5미터)를 날을 위로 향하게 한 채 변사체 밑 물속으로 넣어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걸고 물가로 끄집어 내어 나중주, 최왕균, 이환기 및 천대표가 좌우 다리 좌우 어깨쪽과 마대끝을 각 붙잡아 그곳으로 약 65미터 떨어진 풀밭으로 옮겨 놓았다.

0. 12:20경 순경 이환기가 변사체 바지 주머니를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사체가 팽창하여 손이 들어가지 아니하자 순경 천대표가 연필깎기칼로 바지 좌측 호주머니를 찢고 순경 이환기가 주민등록증, 도장 및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를 끄집어 내었다.

0. 14:00경 의사 김세현(37세, 북구청 보건소 관리의사, 전남의대졸업, 가정의학 전문의)이 사체검안. 경감 주춘근이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수원지 관리소에서 북부경찰서로 전화하여 유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변사자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자임을 확인하였다.

0. 15:00경 광주지검 검사 문세영이 북부경찰서로부터 변사자가 수배중인 자라는 전화보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관련으로 수배중인 이철규임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후, 변사자의 신분으로 인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7:00경 광주지검 형사 제1부장검사 김각영, 검사 이정웅이 현장에 나가 변사체를 검시하였다.

사체검시중 청옥동파출소 순경 이환기는 북부경찰서 수사계장 주춘근과 청옥동 파출소 소장 정왕기의 감독하에 시신의 호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을 발견하였다.

0. 사체검시 이후 검시조서와 압수조서(주민등록증, 도장, 현금 3,000원)는 김자술과 최영조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검시 책임자는 북부경찰서 형사계장 주춘근(김자술 경위는 사체검시에 있어서 보조자에 불과함)이었는데 왜 검시조서는 김자술에 의해 작성되다. 김자술은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부경찰서 경장 최영조가 자의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 최초 검안했던 북구청보건소 의사 김세현(가정의학 전문의)은 사망시기를 사망진단서에서 5일 전(5월5일)으로 추정하였으나, 검시조서에는 1989년 5월 3일-5월 4일경으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0. 검시 당시 사체는 전반적 부패현상을 보이고, 얼굴 부위는 짙은 녹색색을 띄고 있으며, 좌측 눈은 개안상태에서 약간 튀어나오고 우측 눈은 감겨있고, 상의는 검붉은 줄무늬 긴팔 티셔츠, 하의는 쪽색바지 흰면 양말에 밤색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다.

### (5) 부검 실시 및 결과

#### (가) 부검 상황

- 시 간 : 1989년 5월 11일 11:05~11:50
- 부검자 : 김각영 (광주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이정웅(주임검사)

김계수(전라남도경찰청 수사과장)

- 집도의 :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고영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한상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마용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고용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조규혁(전남대학교 병리학과 교수)

장민기(광주적십자병원 외과과장)

손장신(광주기독병원 병리학과장)

서재홍(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금남(전라남도경찰청 VTR촬영기사)

최진수(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박재선(북부경찰서 수사과장)

- 참관인 : 박태훈(새날의원장)윤장현(중앙안과원장)

김경수(조대의대 4)김성중(조대의대 2)

유남영(변호사) 김현장(전민련)

정상용(국회의원) 지 선(스님)

김병균(목사)김인원(사업가)

양희승(동문)이우송(신부)

이인규(유족)이승규(유족)

하종래(조대 총학부모협의회 부회장)

#### (나) 부검 결과

0. 사체는 고도의 부패로 거인양의관을 하고 있고 전신에 불규칙 부패수포가 있으며 변사체의 오른쪽 눈은 감겨있고 왼쪽 눈은 안구가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오른쪽 눈을 여는 순간 안구가 튀어나왔는데 이는 부패가스 분출로 인한 것이다.

0. 왼쪽 종아리, 양 허벅다리, 양 손목, 좌측 뺨 등에 약간 굵힌 자국이 있고 가슴, 팔, 다리 등 전신에 부패로 인한 수포와 박피흔이 있으며 달리 사인이 될만한 외상은 없다. 안면이 검정 또는 녹색색으로 변화였는데 이는 안면 피부조직이 다른 부위보다 연하고 공기에 많이 노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0. 사체 외부에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체 인양시 부패체액이 터지면서 흘러내린 것이고, 팔목부위에 가벼운 상처가 나있으나 이는 부패에 의한 표피박리일뿐 끈이나 수갑으로 묶인 자국으로 볼 수 없으며 설골골절, 경부출혈 등 목졸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양 손과 발 부분에서 표모피(피부가 물에 불어 부풀어 오르고 주글주글한 현상)가 형성되어 있었다.

### (다) 가검물 감정 결과

0. 폐는 수종과 그 주변의 기종상 및 폐포강내출혈 등 익사폐의 소견을 보이고 혈액과 비의 혼합물 및 위 내용물에서 농약, 의약품, 일반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액과 비혼합물의 알콜 농도는 0.08%이며 각 장기, 즉 좌폐, 우폐, 간, 심, 비, 좌신, 우신에서 공히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며, 간을 재료로 하여 검사한 혈약형은 비(B)형으로 반응하고, 위 내용물은 시금치, 파, 호박, 콩나물, 무조각, 양파, 홍당무, 쌀밥알 등이며 식후 경과시간은 약 2시간 전후로 추정된다.

### (라) 사인

이상과 같은 부검 및 가검물 감정결과에 따라, 본 시체가 수중에 있었다는 증거로 양수부 및 양측부에 공히 표모피가 형성되었고 양폐, 양신, 심, 간, 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며, 폐의 조직학적 검사상 국소적인 수종과 그 주변의 기종상 및 폐포강 내출혈을 보이는 등 익사폐의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시체의 사인은 익사로 사료된다고 발표했다.

## (6) 경찰의 유류품 수색 및 조치

### (가) 유류품 수색

0. 5. 11. 11:00-18:00간 북부경찰서 대공과장 경정 한강택이 형사기동대 134명을 동원, 청암교 3거리에 청옥동으로 통하는 도로 우측 산 일대와 수원지 내 사체 발견 지점 주변 수색을 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0. 5. 12. 10:30-17:00간 위 한강택이 형사기동대 134명, 북부경찰서 도보대 66명, 계 200명을 동원하여 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수원지내 일대와 도주방향 산속을 수색한 결과 11:00경 청암교에서 저수지쪽으로 70미터, 도로에서 산쪽으로 30미터 지점에서 쇠파이프 3개(길이 140센치, 125센치, 113센치, 직경 2센치 스텐레스 중고 흰색)를 발견. 11:45경 취수탑으로부터 청암교 쪽으로 약 100미터 지점, 수원지 출입통제 철조망안 도로로부터 약 9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있는 파리똥 나무밑에서 사과리 잠바 1점 (잠바 안주머니에 "길목" 카페 상호가 적힌 성냥갑 1개, 88담배 1갑(6개비), 프라스틱 라이타 1개, 소형수첩 1개(80원 우표 2매가 끼여있음), 열쇠 4개가 들어있었음)과 수면쪽 70센치 상거지점에서 27조각난 메모지를 발견하고 검찰에 인계하였다.

0. 5. 13. 10:00-17:00간 북부경찰서 방법순찰대장 경위 조영재가 북부경찰서 도보대 67명을 동원, 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수원지내 일대와 도주방향과 산속을 수색한 결과 15:00경 피검문자가 도주한 산속 도로로부터 산능선으로 15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대변, D.M뽕이 적힌 종이 1점, 대변발견 지점에서 20센치 상거한 지점에서 삼각팬티(백색바탕에 청색 줄무늬) 1점을 발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

0. 5. 14. 10:00-17:00간 북부경찰서 방법순찰대장 경위 조영재가 북부경찰서 도보대 70명 동원, 사체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원지내 일대와 도주방향 산속을 수색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

### (나) 유류품 처리

0. 5. 10. 12:00경 청옥동 파출소 순경 이환기가 사체 안양시 주민등록증 1매, 도장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도장 1개,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를 수거하여 형사계 경장 최영조가 사무실에 보관중, 5. 12. 조선대학교 학생처장 박열에게 사체와 함께 위 소지품을 인계.

0. 5. 11. 사체 부검 종료 즉시 수사과 경사 최진수는 변사자가 착용한 티셔츠, 런닝셔츠, 혁대, 바지, 구두, 양말, 팬티 등을 수거하여 같은 장소에 있는 박스에 비닐을 깔고 넣어 북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물치장에 보관 중. 경사 최진수가 5. 12. 13:30-14:00경 꺼내어 사진만 촬영하고 넣어두었다가 5. 13. 경장 정관찬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반하여 같은 연구소 숙직자 이진훈, 조재홍에게 인계하여 감정의뢰.

## 다. 수사결과와 문제점

### (1) 검문 경찰들의 검문전 행적

검문 경찰들의 검문전 행적에 미심쩍은 점이 있는바, 수사 초반기에는 각 경찰들의 진술이 달랐으나 일정기간 이후부터 진술이 통일되었다.

김자술 등의 검문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퇴근시간, 근무명 하달시간, 도시바다 회식의 참석 여부, 저녁식사 장소, 효죽파출소 집결 과정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김자술의 2회조서에는 19:00 사무실 잡무처리 후 자택에서 식사, 21:15경에 효죽파출소 출발로 되어 있는데, 5회 조서에는 도시바다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반복되었다. 김남태의 5회 조서에는 잔무처리 후 구 호전 근처의 어떤 회집에서 식사후 같이 대기장소인 효죽파출소에 도착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재풍의 2회 조서에는 5월 3일 18:00 형사계 칠판을 보고 당일 근무를 알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효죽파출소 도착하였는데, 21:00에 이미 4명이 도착하였다고 되어 있었는데, 6회 조서에는 5월 3일 19:30-20:00경 도시바다 회집에서 회, 낙지, 밥을 먹고 로얄다방에서 커피를 마신후 고재풍과 김남태는 고재풍 소유의 포니2(광주 1가 4127호)를 타고, 박재환, 김자술, 박윤호는 박재환 소유의 스텔라 승용차를 타고 효죽 파출소에 집결하였으며, 검문 근무후 고재풍이 김남태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되어 있다. 반면에 박재환의 1회 조서에는 각자 저녁을 먹고 21:00에 효죽 파출소에 집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반복이 없었다. 박윤호는 18:30경 북부서를 출발하여 도시바다 회식에 참가하였고, 20:30경 효죽파출소 도착하였는데, 도시바다에서 검문팀과 함께 식사하였으며 김자술, 박재환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치형은 21:25경 효죽파출소를 출발하여 21:55경 수원지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극히 미흡했고, 오히려 각본수사의 의혹마저 있다. 초기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보면 회식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떤 장소에서 검문에 대한 모의를 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남는다.

한편 위 김자술, 고재풍팀이 5월 1일에도 검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원경찰 홍성하가 김자술 등이 5월 1일에도 청암교에서 검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북부서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수사과장의 명에 의거 형사계 1,2,3,5,6반이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하는데, 김자술팀이 5월 1일에 근무하였다면 다음 근무일은 5월 6일이야 할 것인데, 5월 3일에 다시 근무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인 검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특별지시에 의한 특별근무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검문전 행적이나 검문 도착시간에 대한 검문 경찰들의 진술이 초기에는 계속 엇갈리다가 5차 조서에 가서야 통일된 것으로 보아 사실은폐조작의 의혹이 짙으며 김자술 팀이 검문 근무는 보조근무나 특별지시에 의한 돌발적인 근무로 보여진다.

## (2) 검문경찰들이 검문 당시 이 열사의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검문 당시 경찰관들은 이 열사등 민주조선 관련자에 대한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검문 당시 이 열사의 얼굴 등 인상착의와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첫째, 4월 28일 조선대 후문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도중 학생들에 의해 잡힌 경찰관 윤항원, 김영덕, 나명수의 자필 진술서와 이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수배자 명단, 사진등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둘째, 이 열사등 민주조선 사건 관련 수배자의 검거조가 동부서 소속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부서, 북부서, 전남도경 등의 전 경찰서 및 수사 관련 전부서가 관계되어 있었다. 셋째 4월 18일 민주조선 편집위원 김경애양을 체포현행한 수사팀은 관할인 동부서가 아니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이처럼 민주조선 관련자 검거는 전 경찰서의 수사과정상 급선무였고, 이같은 경찰의 경쟁적 검거는 단순한 경찰 내부의 선결과제가 아니라 상급수사기관, 즉 공안합수부의 독촉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배대장에 '이철규'가 아닌 '이철환'으로 수배가 되어있어 북부서 경찰관들은 이철규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동부서 수사과 경장 윤항원으로부터 입수한 수배자 명단에는 분명히 한글로 '이철규'라고 되어 있으며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한 650506-1661416으로 되어있다.

## (3) 검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의문

(가) 당시 20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검문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시민들은 평소 이곳에서 거의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이처럼 대규모 병력(15인 이상)이 동원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한 5월 3일 박효, 윤종남 일행이 이 열사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통과하던 21:20경에도, 이

열사가 약속장소에 오지 않자 되돌아 나오던 중에도 검문을 받지 않았다.

경찰의 검문시작 시간은 1차 진술 때 한결같이 21:20에 검문초소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야 이치형 의경(운전병)의 진술에 맞추어 21:55경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검문시간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4수원지의 검문이 경찰에서 말하는 순차적인 검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급박하게 실시된 검문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검문경찰관들은 한결같이 김자술을 중심으로 여섯 명의 경찰관이 검문을 실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여실히 부정된다. 광주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이대형 교사 일행은 부부 동반모임을 호반산장에서 갖고 저녁식사후 호반산장을 떠나 청암교 근처 삼거리 검문장소를 밤 21:40-50경 서행으로 지나가던중 잠바 차림의 젊은 남자 10-15명 정도가 모여앉아 무언가를 길거리 한쪽에서 먹고 있었고, 관리인 숙소쪽에 봉고차(경찰콤비) 2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대형 교사는 "동료 11명과 함께 당일 호반산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21:45경 이곳을 지날 때에 열댓명의 사복전경으로 보이는 잠바차림의 젊은이들이 관리인 집근처의 길가에 있었다"면서 "많은 수의 경찰과 봉고차가 밤늦은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이 금방 무슨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며 함께 탔던 동료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 연수교사 정인현, 하정수씨 일행은 그날 새로 산 차량의 고사를 지내기 위해 승용차 5대에 10여명이 분승해 밤 10시경 청암교 근처 삼거리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경찰 25인승 콤비와 12명 정도의 병력이 취수장쪽 도로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학생 윤을순, 김태홍씨의 증언에도 친구와 밤 22:30에 약속을 하고 근처를 돌아 22:00쯤 드라이브를 시작하여 산장쪽으로 가던중 청암교 다리를 바로 지나면서 25인승 콤비차가 관리인 숙소 쪽에 주차해 있고 차량 옆쪽에 날째 보이는 사복 차림의 5-6명이 "야"하는 소리와 함께 취수탑 방향 도로쪽으로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고 곧 바로 콤비차가 추격하고, 김삿갓 시비쪽에서 2-3인의 사복차림의 남자들이 뒷따라 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경찰의 검문시간은 정확히 이 열사가 검문지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시작됐다. 이 열사가 그곳을 지나던 3일 저녁 삼거리에는 15-20인 이상의 병력과 중형차 2대 정도, 승용차 등이 출동하여 이 열사를 추적하였다. 이처럼 3일 저녁 경찰 또는 공안기관은 이 열사의 이동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청암교 삼거리에서 계획된 검거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열사의 사전구속영장이 5월 3일 밤 20:50경에 문세영 검사의 신청으로 발부되었다.

(나) 검은색 지휘용 승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거현장에는 단순히 검문경찰차만이 아닌 검은색 지휘용 승용차가 있었다. 관리인 아들 최성배군의 증언에 의하면 5월 3일 저녁 바지를 빨고 손발을 씻은후 막 방에 들어가려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 5-6명이 무전기를 들고 쫓고 있었으며 그 뒤를 따라서 검은 승용차와 경찰 콤비차량이 쫓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이 열사를 태우고 간 택시기사 이재민씨도 이 열사가 산속으로 도망갔다는 지점까지 서행운행하면서 가다가 검은 승용차가 취수탑쪽에서 다가와 자신의 차와 만나는 지점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검문초소쪽으로 간 것을 증언하였다.

검은 승용차가 검거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경찰의 주장대로 단순히 택시 강도를 예방키 위한 검문이 아니라 이미 정보 수집된 이 열사의 이동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검찰은 검은 승용차는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으나 경찰관들의 최초 진술조서에도 박재환 순경은 “승객과의 거리가 10m쯤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승용차가 라이트를 비추고 추격하여 저의 앞을 지날 무렵 도망하던 승객은 우측산 언덕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박윤호 순경은 “도망치는 청년을 따라 약 100m정도 뛰어가니 승용차가 산속으로 나있는 사잇길 입구에 정차하고 있어 그쪽으로 뛰어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검은 승용차의 역할은 그 당시의 현장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박윤호 순경은 그 지시에 의해 도주도로 뛰어 올라간 것이다. 그렇다면 검은 승용차는 도주와 추격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검은 승용차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 당시 목격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았다.

#### (다) 도주경로에 대하여

검찰은 이 열사가 제4수원지에서 익사한 것이며 익사의 원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광주로 되돌아 오기 위해 수원지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 경내에 들어왔다가 다리밑 축대에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재환 순경이 이 열사를 붙잡지 못한 이유로 박재환 순경은 82kg에 36세인 반면, 이 열사는 63kg에 25세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일정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하고 매일 쫓기는 생활을 하던 이 열사가 음력 3월 28일 달도 없는 한밤중에 지형지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닥친 경찰과 차량의 추격에 놀라고 위축된 상태에서, 강력범을 검거하는 직책에 있는 건장한 형사를 따돌리고 처음 가보는 산쪽 사잇길을 찾기로 급히 회박하고, 설령 산속언덕으로 올라서더라도 커다란 묘가 있고, 소나무 숲이며 잡목만 덩성덩성있는 공터에서 가쁜 숨을 쉬는 상태로 곧 바로 몸을 숨기기가 어려운 일이어서 위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열사는 도주시작 시간으로부터 18분내에 산속에서 다시 내려와 수원지 쪽으로 오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게 된다. 만약 숲속에 은신하여 경찰을 따돌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은신하는 시간은 김자술 경위가 10m정도를 오르다가 발목을 빼어 김남태 경장의 부축으로 하산하는 시간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후레쉬 불빛이 현란한 그곳에서 피해가기란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곳의 지형에 비추어 18분 이내에 철조망을 통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열사가 찾았다는 철조망은 관리인 집으로부터 3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가로 56cm, 세로 30cm 간격으로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인데 이 열사가 우연히 이를 찾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철조망은 비교적 남아 녹슬어 있는 상태였고, 군데군데 사람이 기어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했으나, 철조망의 기둥은 2m 간격으로 서 있으며 관리인 최왕균씨에 따르면 사람이 기어들어 갈 수 있는 곳은 두곳 정도가 있는데 한곳은 물이 흐르는 암거이며, 또 한곳은 수원지 관계자들만이 아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칠혹같이 어둡고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

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철조망 사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 열사의 손목 상처가 도주할 때 생긴 것이라면 칠혹같은 어둠속에서 맨손으로 숲속 도주와 철조망을 찾기 위해서는 지형과 수목구조로 인해 오히려 손바닥과 손 등에 찢긴 듯한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사의 손바닥이나 손등에는 아무런 상흔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두운 산길을 달리는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철조망의 가시도 용케 한 번에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 (라) ‘퐁당,’ ‘어푸어푸’ 소리에 대하여

경찰은 익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퐁당,” “어푸어푸”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5월 12일 전남경찰국 보고자료에는 청원경찰 홍성하씨가 ‘침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운전하고 있던 의경 이치형과 김자술 경위의 경찰관 2명, 동료 청원경찰 이행민씨 등은 들은 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5월 25일 현장검증시에는 청원경찰 홍성하씨와 의경이 다리부근에서 “악,” “퐁당,” “푸우” 하는 물을 뿜는 듯한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이행민씨에게 “저 소리 좀 들어보라”며 이행민씨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진술이 어긋나는 점은 의문이다.

한편 이 소리를 듣고 재빨리 청암교 다리 아래쪽을 비추었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하나 의문이다. ‘악’ 소리를 듣고 1분만에 차에서 내려 익사현장의 수면을 후레쉬로 비추어 보고 뭔가 흔적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수면은 평정을 이루었다고 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자동차의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다리쪽에서 나는 ‘퐁당’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또한 설령 소리를 들었더라도 구체적인 장소를 식별해 내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 익사의 진행이 4~5분 정도 경과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키를 넘지 않고 한길도 채 못되는 물속에 빠진 이 열사가 허우적거리면서 일으키는 흙탕물이라든가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내는 기포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익사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비약이다.

또한 5월 3일밤 10:56경에 ‘퐁당’ 소리를 듣고 경찰들이 다리 아래쪽에 후레쉬로 비췄다는 것조차도 양희승군(당시 재수생)의 제보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양희승군의 말에 의하면 “공부를 마치고 28번( 시내버스) 막차를 타고 청암교에서 내려 청옥동에 있는 집으로 걸아가는데 다리에서 취수탑까지 이르렀을 때는 아무도 없고 사방이 조용했다. 이때 막 커브를 꺾어(이곳은 지리적으로 길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급커브가 있다) 가는데 갑자기 앞에 쌍라이트를 켜고 오는 콰이어가 자신의 걸을 지나칠 때 갑자기 심한 라디오 소리같은 소음을 일부러 크게 켜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차속에서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양희승군은 깜짝 놀라 ‘별 미친놈들 다봤네’ 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콰이어량은 산에 대고 “하산하라”는 방송을 하며 곧바로 광주쪽으로 향하여 그냥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철규 열사를 체포해서 차에 태웠고 비명소리를 위장하기 위해 차안에 불륨을 키우고 지나간 것이라는 의혹을 준다.

또한 사건 당일 이 열사를 체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나타난 경찰의 태도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강도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기사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조차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돌려 보냈으며, 글자 한자밖에 안틀린 주민등록번호와 이 열사의 동생 이름 ‘이명규’를 대고 전

남대생이라고 했는데도 다음날 수배학생들의 명단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에 이철규 열사의 주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당시 현장에서 이 열사를 체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준다.

#### (4) 사체 발견 및 검시 과정

(가) 평소 수원지 의사체 발견시는 신고와 출동이 모두 청옥동 파출소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 북부경찰서에서 직접 출동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설혹 북부경찰서에서 출동한다 하더라도 간부 1인(경위급 이상)과 직원 1인이 출동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날 사체발견 초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북부경찰서에서 형사계장 경감 주춘근, 경위 김자술, 경사 최장열, 경장 최영조와 청옥동파출소의 경위 정왕기, 순경 천대표, 순경 이환기등 간부 3명과 직원 4명이 출동하였다. 이와 같이 조속히 북부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은 이들이 이를 예견하거나 다른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최초 검안했던 북구청보건소 의사 김세현(가정의학 전문의)은 사망시기를 3-5일전(5월 5일 내지 7일)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검시조서에는 89년 5월 3일-5월 4일경으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검의 이원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안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지 7일, 물속에 있는지 2-3일된 시체라고 말했고,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부검결과 발표 당시 "물속에 있는지 2-3일 이상"이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5월 3일 밤에 실족의사를 했다면 최소한 물속에 7-8일 이상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체 발견 이후 검안과 부검을 했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검찰의 발표대로 5월 3일 검문을 마지막으로 실족의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 (5) 부검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

#####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정상의 문제점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부검의 철칙인 장갑과 마스크 등의 교환수칙을 어겼으며 이는 각 장기가 플랑크톤으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하고 결국 각 장기내 플랑크톤의 발견으로 인해 검찰의 실족의사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 골절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폐기종을 확인하기 위한 X-ray검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3) 과수연은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시간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기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① 위장의 내용물은 사망 2시간 전에 먹은 식사로 여겨지는데, 사망뒤의 부패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사망 뒤 몇일 경과했는지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국과수는 밝혀내지 않았다.

② 소장 내용물을 검사함으로써 소화된 짜장면과 단무지 등이 들어 있는지가 확인된다면 5월

3일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경찰 등에 연행당한 후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음에도 국과수는 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③ 손과 발의 표모피는 5월의 수온에서 2~3일이 경과하면 형성된다. 이원태(국과수)씨도 이철규 열사의 시신에서 진행된 표모피를 보고 최소 2~3일이 경과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신이 7일간 물속에 있으면 장갑상, 양말상의 표피박리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열사가 5월 3일 실족의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5월 6~7일경 시신이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과학적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이 열사가 최초 추격을 당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처 등의 염증 변화를 추정하면 5월 3일 밤에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연행 당한 후 몇일 뒤에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국과수는 염증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4) 고문과 구타에 의한 외상으로 의혹되는 모든 현상을 국과수는 부패현상으로만 단정함으로써 조직검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의혹을 크게 하였다는 것은 부검상의 중대한 미비점이며 불성실할 태도였다.

① 두정부, 두피하의 암자색 제리상 물질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왼쪽 안구만이 돌출된 것에 대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는데 조직검사도 행하지 않고 부패현상이라 하고 있다.

③ 오른쪽 어깨가 좌측에 비해 심하게 부어 있으며, 반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좌우 비교 조직검사를 행하지도 않았다.

④ 양 손목, 양 발목에 끈으로 묶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부종 및 염증유무를 조직검사도 하지 않았고 특히 양 손목의 탈색 부분은 물속에서 무엇인가 감겨져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써 타살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 (나) 가검물의 봉인과 운송, 채취 및 조작 과정의 문제점

1) 가검물을 담은 용기의 소독 및 액체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가검물 운송과정에서의 공개가 행해지지 않았다.

3) 가검물의 채취, 조작, 슬라이드 제작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 (다) 의사판정의 문제점

국과수는 각 장기내의 플랑크톤 발견과 의사폐의 소견으로 의사판정을 내렸으나 미비점이 많고, 육안적 소견이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이 있다.

1) 의사라면 위장과 폐장에서 익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흡수되었다고 할지라도 흉탕물이 흔적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위장과 폐장은 매우 깨끗하였다. 익수가 폐로 흡입되는 경우 폐기종 등의 현상으로 폐가 부풀리며 이에 따라 흉곽의 확장고 폐의 전면에 압흔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전

혀 발견되지 않았다.

2) 각 장기의 플랑크톤 유무보다는 더욱 신빙성을 가진 것이 치수와 골수에서의 플랑크톤 발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3) 미국의 법의학계에서는 장기간 플랑크톤의 유무가 의사를 판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으로 찬반 양론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명확한 관점이 없이 의사판정을 하였다.

4) 전문가들도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나 의사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물고문에 의한 것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5) 법의학적으로 타살일 경우 의사를 가장한 시신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 더욱이 소견이 의사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라) 기타 부검 결과의 문제점

##### 1) 알콜(0.08%)의 검출에 대해

검찰은 "5월 3일 이 열사가 술이 알맞게 취한 채 도주하다가 실족, 익사했다"는 실족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알콜(0.08%)의 검출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신의 부패와 발효 과정에서 알콜이 생성되는데 그 농도는 0.1%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0.1% 이상 검출되어야만이 사망전 음주를 합리화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열사는 평소 술을 못하여 그날 마지막까지 만났던 증인들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2) 왼쪽 안구 돌출과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

국과수에서는 왼쪽 눈알 돌출과 오른쪽 어깨의 부어 있는 상태에 대해 단순한 부패 현상으로 답변하였고, 한쪽 부위에서만 그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은 물 속에서 비평형상태(비스듬히 기운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물 속에서는 시신이 부단히 전위할 뿐만아니라, 좌우어깨의 수온과 수압은 무시 할 수 있으므로 특정부위만 심하게 부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비평형상태에 있었다해도 눈은 왼쪽에서 어깨는 오른쪽에서 부패가 더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 3) 손목과 발목의 띠 형태와 탈색, 표피 박탈에 대해서

"그것은 단순히 굵힌 상처다"라고 발표했지만 단순히 굵힌 상처라면 '왜 띠 형태로 나타났는지, 또한 다른 피부와는 달리 탈색된 부위가 왜 띠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띠 형태로 되어있는 발목의 표피 박탈부위는 무언가에 감겨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며, 손목의 띠형태 탈색부분 또한 물속에서 무언가에 감겨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 4) 두정부의 두피하 암갈색 젤리상 물질에 대하여

뇌는 약간 부패된 상태였고 특이한 골절소견은 의견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정부의 두피하 암갈색 젤리상의 물질(숫가락 크기)이 2군데에 국한되어 발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수연에서는 결합조직의 부패현상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만약 그것이 결합조직의 부패에 의한 것이라면 국소적으로 두 군데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결합조직의 부패현상이라고 단정한 점은 비과학적이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 5) 사망시기에 대하여

부검의 이원태(국과수 법의학자)씨는 처음 기자회견에서 육안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지 7일, 물속에 있는지 2~3일된 시체라고 말했다(국과수에서는 물속에 있는지 2~3일 이상이라고 수정 발표). 만약 5월 3일밤 실족사에 의한 익사였다면 5월 10일 발견될 때까지 7일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과수는 사망 전에 발생한 왼쪽 얼굴의 "7"자 상처, 오른쪽 종아리 상처, 손등 부위의 긁히고 찢긴 듯한 상처들의 사망할때까지의 경과시간과, 내장의 부패정도 또는 시신의 부패정도, 그때의 환경조건으로 사망시간과 물속에 있었던 시간과의 편차를 명백히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망전에 생긴 상처들이 부패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물속(2~3일)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사망시간(7일간)의 추정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6)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이 현저히 검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국과수는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더 심한 부패로 안면과 목주위가 까맣게 변색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지만, 다른 노출 부위나 손에서는 심한 색깔변화가 없었으며 복부팽만 등 의사의 사인이 경미했던 점으로 보아 부패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외력에 의한 손상, 울혈현상(사람을 거꾸로 매달면 피가 머리로 모이게 되어 나타남)에 의한 색깔변화, 전기고문에 의한 화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7) 위속의 밥알 검출에 대해

이 열사의 위장에서는 사망시간과 식사시간의 간격이 두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밥알과 시금치등이 검출되었다. 5월 3일 이 열사는 짜장면을 먹은 17:30 이후 식사를 한적이 없었다.

검찰이 실족익사했다고 주장하는 22:56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위 내용물인 밥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설령 그 시간에 익사했다하더라도, 최소한 5시간 전에 먹은 짜장면이 소장



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짜장면 대신 밥알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사망전 분명히 쌀밥을 먹었다는 것이며, 검찰은 이 열사의 당일 행적중 17:30~20:00까지의 행적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 시간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다고 변명을 했으나 웅색하다.

#### (마) 재부검의 거부

범국민위는 구체적으로 권위있는 법의학자 로버트 커쉬너 박사를 초청해서 재부검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

#### (바) 해부 과정

이 열사의 시신 발견후 6개월 이상이 지난 1989년 10월 29일 14:20부터 19:30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서 박규호(조대병원 병리학과장. 63세), 김종중(조대병원 해부학. 39세), 전호중(조대병원 병리학. 36세) 교수의 집도로 이 열사의 시신에 대한 해부가 실시되었다. 이날 해부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고 이철규열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보건의료인 공동대책위·보건의료계열 학생대책위', '범국민위'등이 참관하여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해부는 신체의 광범위한 피부절개를 통해 자세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각 신체장기에 대한 생화학적,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장기를 채취한 후 해부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오른쪽 종아리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 허리부위의 근육내출혈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6) 유류품의 문제

#### (가) 발견된 안경

1989년 5월 4일 08:00경 광주시 동구 청옥동에 있는 제4수원지 관리사무소에서 취수탑쪽으로 약 60m 간 지점에서 우측 산위길로 약 4m 가량을 올라간 지점에서 장원유치원(광주시 동구 산수3동 소재) 미니버스 운전기사 김수송씨가 발견하여 5월 13일 08:00경에 광주시 동구 산수3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장원파출소에 신고하여 검찰이 압수하였다. 검찰은 안경발견 지점(검문지점으로 부터 175m)을 도주도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검문경찰관들의 진술을 번복하여 도주도로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안경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열사의 안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특별한 해명없이 도주도로 그대로 확정하였다.

#### (나) 발견된 잠바

1989년 5월 12일 11:45경 취수탑으로부터 청암교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 수원지 출입통계 철조망안, 도로로부터 9m 떨어진 지점에 서있는 파리동 나무밑에서 의경 소형민이 베이지색 계통

의 잠바를 발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 검찰은 이를 이 열사의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이 역시 이 열사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잠바 발견 장소는 위 도로변으로 내린 비(5월 6일 8.1mm, 5월 10일 2.8mm, 5월 11일 14.7mm, 5월 12일 5.2mm)가 흘러내리는 위치인데도 발견된 잠바는 양전히 개어져 있는 상태로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 (다) 잠바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유류품

당일 검문 받기전 '길목카페'에서 88라이트 담배를 한갑 샀는데 (이는 당일 이회복양이 차 값을 계산하면서 담배값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발견된 담배 속에는 6개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 이 열사의 담배 습관으로 봐서는 카페에 있던 30-40분 사이에 14개피를 피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도주중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담배는 성냥처럼 조그만 물방울이나 습기에도 노랗게 변색이 되고 풀어 헤쳐진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상수리 나무밑에 있었기에 점퍼나 담배, 수첩이 비에 젖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나 의문이다. 3일 이후 서너번의 비가 왔고 점퍼의 발견장소는 위 도로변 등에서 내린비가 흘러내리는 위치였다.

점퍼 발견 당시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수첩은 위로 넘기는 수첩이었으며 찢어진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열사가 네조각으로 찢어버렸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는 옆부분에 뜯어진 자국이 있었다. 따라서 발견된 수첩과 찢어 버려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도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 (라) 뒤늦게 발견된 20만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수물리실에서 5월 14일 09:30경 바지를 개봉한 후 수색하던 중 바지 뒤쪽 우측 호주머니에 10,000원권 지폐 20개가 든 흰 봉투가 반으로 접힌 상태로 들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 14일 이전에 경찰이 사체에 대해 7-8 차례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수물리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이 열사가 택시를 타고 호반산장까지 가려면 차비만해도 4천원인데 어떻게 유류품에서 3천원밖에 나오지 않느냐? 또한 이철규 열사는 반으로 접히는 지갑을 가지고 다녔고 식당에서 1만원권으로 계산한 사실이 2일날 있었다"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 후에 발견되었다.

#### (마) 발견되지 않은 유류품

박효(88년도 조대 여학생회 간부, 후배)양의 증언에 의하면 2일 밤 21:40-50경에 지산유원지 음식점 '수궁'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이 열사가 음식값을 반으로 접은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로 계산을 했으며, 5월 3일 '길목카페'에서 만난 이회복(24. 호남대 국문과 졸. 후배)양은 불펜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편 심재수(21.조선대총학생회 홍보부. 후배)씨는 4월말경 양동시장에서 런닝과 팬티를 구입하여 학교에 두고 있다가 5월 3일 아침전화를 받고 20:00경 금호고 앞에서 이 열사에게 건네 주었다. 런닝과 팬티는 하얀 바탕에 파란줄이 들어있으며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건네 주었고, 이 열사는 그것을 사파리 주머니에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견된 유류품중에는 지갑과 볼펜 그리고 런닝과 팬티가 없다.

#### 4. 김용갑 열사 사건

##### 가. 사건의 경위

김용갑 열사는 1966년 2월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출생하였다. 대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82년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1985년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1989년 속초 동우전문대학교 양식과에 수석 입학하였다.

동우전문대학은 1980년에 설립되었고 다른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시설이 형편없고 교수가 부족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어 학생들의 개선요구와 항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대학측은 학생들의 개선요구에 대해 학생과 직원들과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과 협박으로 대처하였다고 한다.

동우전문대 학생들은 1988년에 '동우학원민주실천위원회(동민위)'를 비밀리에 구성하고 학원자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용갑 열사는 동우전문대에 입학한 후 대학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1989년 4월에 편집자울권을 요구하며 항의 사퇴하였고, 9월에는 동민위에 가입하였고, 11월 제5대 총학생회장선거에 운동권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총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이후 김용갑 열사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은 엄청난 폭력과 탄압을 당하였으나,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김용갑 열사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김 열사가 1990년 3월부터 총학생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자 학교측은 총학생회장직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학생과 직원으로 영입하여 노골적인 탄압을 하였다고 한다. 3월 6일부터 2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납치,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김 열사는 3월 27일 학생회장실로 난입한 학원폭력배 5명에 의해 감금되어 무릎을 꿇린 채 학생회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구타당하였다. 김 열사는 3월 27일 15:00경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학생회장실을 나갔고, 이들과 만나 19:0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스넥집, 20:20경 시내 술집, 21:40경 동일갈비, 22:50경 호프집에 들린 후 23:20경 노학동 소재 스넥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로부터 2시간 35분후에 사망한 채 시신이 인도에서 발견되었다.

##### 나. 경찰의 수사결과

속초경찰서가 1990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사상황보고(동우전문대 학생회장 교통사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건개요

###### 0. 발생일시, 장소

- 1990. 3. 28. 02:00경
- 속초시 노학동 도로공사 연수원앞 노상

###### 0. 피해자

- 본적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법치리 323
- 주소 : 경기도 하남시(광주) 신동 213
- 동우전문대학생회 회장 (양식과 2년)

김용갑 24세

###### 0. 피의자

- 주소 : 속초시 교동 822

무직, 문종식 33세

'78년 부산해양전문대 졸

'78년-'88년 외항선 승선

'88년-'89년 쌀가게 운영

'89년 9월-'90년 2월 서울 비너스패션 외판

\* 처 : 국민학교 교사

###### 0. 범죄사실

피의자는 1990. 3. 22.경 피의자 소유 서울1조5102호 엑셀승용차를 도박판에서 빌린 돈 140만원을 갚지 못하여 김봉태에게 담보로 맡겨두었는데, 3. 28. 01:00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옆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세워놓은 위 차량을 보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로 갈 생각으로 보관자 김봉태의 승낙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스페어키로 시동을 걸어 미시령쪽으로 가던중 정아콘도 부근에 이르러 돈을 구하여 빚을 갚고 차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돌려 내려오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추월코자 좌측코스로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돌렸으나 좌측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것임.

##### (2) 사고후 피의자 행적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후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보이지 않자 겁이 나고 당황하여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여 피의자가 살고 있는 속초시 교동 소재 로얄아파트옆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서 익일 오후 한미시트카바에 가서 자동차카바를 구

입하여 차를 덮어둔 후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매형 최호규(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앞유리와 백미러가 깨졌는데 부품을 사 갖고 오라고 하여 매형이 진주 대동부품센터에서 사 갖고 온 부품으로 손수 백미러 등을 교체한 것임.

### (3) 사건신고 경위

대명운수 강원1아7008호 운전자 박경호는 원성운수 강원1아4022호와 같이 속초에서 승객 3명씩(일행 6명) 태우고 설악동으로 가던 중 현장 전방 약 400미터 지점에서 마주오는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기 때문에 겨우 충돌을 모면하고 교행하여 사고현장에서 우측 도로변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슬취한 사람으로 알고 그대로 지나가 설악동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현장에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므로 깨워볼려고 가까이 갔던바 입에서 피가 나오므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3. 28. 02:27경에 교통과출소에 신고한 것임.

### (4) 검거(자수)경위

0. 사건현장에 떨어진 후사경(백미러)을 확인한바, 신형 엑셀 승용차 좌측후사경으로 밝혀져 강원도 동해파출소에 비치된 차량대장에서 속초, 고성, 양양지역 엑셀차량 331대의 명단을 작성, 차량별 당일 행적 및 차량 손괴여부 확인.

0. 사건 당일 01:00경에 본건 사고차량을 보관중이던 김봉태로부터 차량 도난신고를 접수.

0. 같은 날 14:00경 본건 피의자(문종석)가 김봉태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 차를 자기가 갖고 서울로 올라왔으니 찾지 말라는 전화.

0. 밤중에 차를 갖고 서울로 갔다는 사실이 의문시되어 전신전화국과 협조, 피의자의 집과 자동차 보관자(김봉태)의 집 전화 수발 사실 확인토록 의뢰함.

0. 같은 날 18:00경 김봉태 집으로 서울에서 피의자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 결과 서울에서 전화한 것이 아니고 속초에 거주하는 누나 문명옥의 집에서 전화한 것으로 체크되어 문종석을 범인으로 확정.

0. 동일 야간에 누나 집앞에 철야 잠복하였으나 출입 사실 발견치 못함.

0. 익일(3. 29.) 10:00경 형사계 경사 최영삼 외 1명이 누나집을 확인 결과 문종석이 독소에 없으므로 자수시킬 것을 권유후 명함을 주고 귀서함.

0. 같은 날 19:30경 피의자가 손수 수리해 놓은 차량을 갖고 외지로 도주하기 위해 누나집에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누나가 "형사들이 벌써 찾아와 자수시키라며 명함까지 주고 갔다"는 등으로 자수를 권유하여 누나와 같이 경찰서로 출두 자수한 것임.

### (5) 조치

0. '90. 3. 30. 구속영장

0. '90. 4. 4. 현장검증

0. '90. 4. 6. 사건송치

### (6)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적

0. 19:00 엄지스넥 학생 7명 막걸리

0. 20:20 동경클럽 학생 6명 맥주 9병

0. 21:40 동일갈비 학생 6명 갈비 및 소주 2병

0. 22:50 하이텔 호프 학생 6명 맥주 각 1조끼

0. 23:20경 정윤석과 마지막으로 헤어져 노학동쪽으로 걸어갔음

\* 사건 직후 동료학생이 피해자가 찾아간 사실 여부를 묻자 왜 그러느냐고 물어 교통사고라고 하자 함구하다가 그 날 자기가 집에 없어서 못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주장.

### (7) 부검 결과

0. 부검일시, 장소

· 1990. 4. 6. 10:00-10:50

· 속초의료원 부검실

0. 참여자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김홍면

·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김봉연 외 직원 6명

· 피해자 4촌형 이창업 30세

· 지역민주청년회장 이태우 30세

· 학생회 간부 박정섭 외 2명

0. 집도 의사

· 집도 ; 김봉수 외과원장 의사 김봉수

· 입회 ; 속초의료원장 의사 노성익

0. 부검결과

· 사인 ; 뇌출혈

· 외상 ; 하악 개방성골절(열창 3Cm)

좌하지부 골절

좌측귀 출혈

우측쇄골상부 찰과상

우측복부 찰과상(10×15Cm)

요추중앙 및 요추부 찰과상

우견갑부 찰과상

우측후부 찰과상  
좌측하지부 찰과상

### (8) 의문점에 대한 해명

(가) 의문점 ; 피의자는 검은색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나 목격자에 의하면 다른 차는 없었다.

· 해명 ; 목격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와 교행하였다는바, 사고차량은 사고현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갔으므로 앞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것임.

(나) 의문점 ; 피의자가 현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는가?

· 해명 ; 사건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지 않음(현장검증시 물을 뿌리고 실험)

(다) 의문점 ; 사고현장에 핏자국이 없고 차량 손괴 정도가 적다.

· 해명 ; 외상이 크지 않아서 출혈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비가 왔으므로 혈흔이 남지 않고 자동차와 충돌 각도에 따라 차량손괴가 다름.

(라) 의문점 ; 사체가 반듯이 누운 자세이고 한쪽 양말이 반쯤 벗겨져 있다.

· 해명 ; 자동차와 충돌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자세가 다르며, 양말은 자동차와 피해자 왼쪽 하퇴부가 심하게 충격(골절됨)하면서 밤바에 스치고 신발이 벗겨져 2-30m 날아갈 때 걸려서 벗겨질 수도 있음.

(마) 의문점 ; 우측 신발은 후방 23m 지점, 좌측 신발은 전방 30m 지점에서 발견.

· 해명 ; 우측 구두는 전방 11.6m, 좌측 구두는 후방 25.6m 지점에 떨어져 있었는데, 자동차 앞 밤바 좌측 모서리에 피해자 좌측 다리가 심하게 충격(하퇴부가 골절되고 3점으로 된 신발띠가 찢라짐)되므로 좌측 신발은 자동차방향(뒤)으로 멀리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딪치지 않은 바른쪽 발의 신발은 앞으로 나가 떨어짐.

(바) 의문점 ; 자동차 앞 유리를 피의자 혼자서 갈아 끼울 수 없다.

· 해명 ; 피의자 혼자서 충분히 갈아 끼울 수 있음.

(사) 의문점 ; 목격자의 진술에 당시 용의차량에 3-4명이 타고 있었다.

· 해명 ; 사고 직후 현장 전방 400m 지점에서 용의차량과 교행한 대명택시 운전사(신고자)는 당시 3,4명이라고 그 차량에 안개등과 뒤에 바람받이가 부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당시 사고차

량은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서 시야가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 힘들 정도여서 교행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차에는 안개등 및 바람받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잘못 보았거나 다른 차를 본 것으로 인정.

### (9) 분석 판단

(가) 일부 학생 및 지민청측 주장

0. 사건 1주일전에 학생과 직원 김진이 학생회장을 조종하고 있는 심용재('89년도 테모주동자로 퇴학)를 만나 "학생회장을 선동하면 죽여버리겠다. 죽이는 방법은 바다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고, 차로 갈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사건 다음날이 학생회 발대식 예정일이며, 지역출신 학생모임인 씨클 "탐"(학생회측에서는 구학대라 함) 회원들이 평소 학생회 간부들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닐 정도(사고시 주머니에서 과도 소지)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학교측의 사주를 받은 일부 세력에 의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이라고 주장.

(나) 분석 판단

0. 계획범이라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나 사건후 피의자가 자동차 보관자에게 차를 갖고 갔다고 서툴게 전화를 걸어서 검거되는 등 치밀성이 없고,  
0.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카바나 부속을 사오도록 하였을 것인즉, 카바를 피의자가 직접 사오고 진주에 있는 매형에게 부탁하여 부품을 사오게 한 점,  
0. 도주 자금 50만원이 없어서 누나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누나 설득으로 자수한 점,  
0. 사건후 누나집 전화를 이용한 점으로 보아,  
0. 다른 장소에서 죽인 후 현장으로 옮겨 교통사고로 위장하였다면 상처 부위에 생활반응(피하출혈)이 없는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하출혈이 없는 상처가 한 곳도 없음.  
\* 이상 각 항을 종합해 볼 때 공범이 있는 위장살인이 아니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실함.

### 다. 수사결과와 문제점

#### (1) 사망 직전 행적의 문제점

경찰 수사결과에는 3월 27일 23:20경부터 사망시까지 김 열사의 행적이 밝혀져 있지 않다. 경찰은 김 열사가 27일 23:20경 정윤석과 마지막으로 헤어져 학생회 총무부장 집쪽으로 걸어갔으며, 사건 직후에 동료학생이 총무부장을 집으로 찾아가 김 열사가 찾아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총무부장은 함구하다가 자기가 집에 없어서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학생회 총무부장에 의하면 당시 찾아온 사람은 동료학생이 아니라 학생과 직원 김진이

있으며, 총무부장이 위 김진에게 자기가 없어서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없다고 한다. 또한 총무부장은 21:30경부터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김 열사가 23:20 이후에 자기의 집을 방문하였다면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 열사는 총무부장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 (2)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의 문제점

문종석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검은 물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사고 현장의 노면에는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장검증시 직접 물을 뿌리고 실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월 28일 02:00경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속초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속초에서 비가 온 것은 28일 02:35경부터로 나타나 있다. 또한 비가 오는 경우에도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는 스키드 마크가 남는다고 한다. 경찰의 발표대로 문종석이 승용차로 김 열사를 친 것이라고 한다면 충격 지점으로부터 7.6m 떨어진 지점에 시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승용차의 속도는 꽤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스키드 마크가 남아야 할 것이다.

## (3) 사고 차량 앞유리 교체의 문제점

문종석은 김 열사와 충돌하면서 차량의 앞 유리와 좌측 뺨미러가 파손되었는데, 이를 도주후에 자기가 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일반인도 혼자서 충분히 갈아끼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전문 유리시트업체 근무자에 의하면 신행 액셀승용차는 다른 차종과 달리 본드접착식이어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기술자도 전문적인 장비 없이 앞유리를 혼자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 (4) 문종석의 행적상 문제점

문종석은 고향이 속초로서 속초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문종석의 행로는 속초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행로가 아니다. 문종석은 서울로 가기 위해 미시령쪽으로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문종석이 처음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곳으로부터 미시령쪽으로는 지름길이 있었는데도 문종석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여 결국 사고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5)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의 문제점

시신 발견 당시 김 열사는 차도의 우측노면(폭 1미터 정도의 흙길)에 차렷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구두는 한쪽씩 시신의 앞뒤로 떨어져 있었고, 나아가 한 쪽 양말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과연 차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반듯하게 똑바로 누운 상태로 있을 지 의문이고 구두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히 양말이 반쯤 벗겨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누군가가 땅바닥에 끌고 다닌 흔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제2부 평가

### 1. 네 사건의 성격규정 : 의문사 사건

#### 가. 정치적 의문사 사건

박창수·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은 모두 희생자가 민족민주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 사망의 경위와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전형적인 의문사 사건이다.

박창수 열사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운동에 종사하였고, 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는 대학생으로서 학생회의 간부로 학생운동에 종사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위 네 사건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정치적 압력과 은폐의 노력의 의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로서 '정치적 의문사'라고 할 수 있다.

#### 나. 진실규명이 필요한 의문사 사건

수사기관은 나름대로의 수사과정을 거쳐 박창수 열사 사건은 자살로, 이내창·이철규 열사 사건은 실족에 의한 익사로, 김용갑 열사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박창수·이내창·이철규 열사 사건의 경우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수사결과 그 누구도 형사처벌된 바 없다. 다만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계호책임을 맡았던 교도관 2명이 계호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파면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는 많은 의혹과 모순 및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하여 피해자측에서는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인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유족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긍할만한 해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결국 위 네 사건은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사인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였지만, 여전히 사망의 원인과 경위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의문사로서의 특징

### 가. 부검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문제

위 네 사건에서 모두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부검 결과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의혹만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체를 일방적으로 탈취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부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파기하고 피해자측의 참여를 배제한 채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결과와 완전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부검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거부는 그 자체로 부검결과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박 열사의 사망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검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논거가 된다.

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 부검과정에 유족측이 입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기관의 부검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유족측이 수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부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검과정에 피해자측이 참가하여 부검이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형식적으로 부검에 참여한다고 해서 부검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망사건의 부검에 관하여는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측이 추천하는 의학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부검소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이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검소견서가 수사기관의 부검의만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의 추천으로 참여한 의학전문가도 부검소견서 작성명의자로 참가하게 되면 그 부검소견서는 피해자측을 설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나. 사망과정에 대한 국가형사기관의 개입 의혹

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없으나, 박창수·이내창·이철규 열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과정에 국가정보기관 또는 형사기관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중 부상을 당하였고 안기부 요원이 전노협 탈퇴공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의혹이 있고, 이내창 열사 사건의 경우 신원미상의 각 남녀 1명을 만난 이후 행적을 감추었고 안기부 수사관 남녀 각 1명이 사망한 섬에 같이 갔다는 의혹이 있고, 이철규 열사 사건의 경우 경찰로부터 검문을 받고 행적을 감추었다가 사체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 또는 형사기관의 개입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여 의혹을 더 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충분한 해명

위 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나름대로 수사를 전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까지의 수사로서 이미 모든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었고,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의혹은 해명할 필요성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여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 네 가지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수사결과와 문제점들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을 내린 후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의문사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의문사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 라. 피해자측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부족

위 네 가지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측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피해자측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로는 물증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인이 조작·은폐된 경우 이에 관여한 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진상규명에 결정적일 것이다.

내부고발자 또는 양심선언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도 제기되고 할 수 있다.

## 3. 의문사 사건의 해결방안

### 가. 의문에 대한 진실규명

의문사 사건의 해결의 출발점은 의문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사망원인과 동기, 사망경위가 우선 분명하게 가려져야 그 다음으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진실규명의 결과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의문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의문사 사건의 사망동기와 경위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어 타살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피해자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모할 것인가 하는 다음 단계로 문제의 초점이 이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1단계로서 의문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기존의 수사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민간차원의 진상조사단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네 사건의 경우 모두 진상조사단 또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목격자를 확보하고 기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활동을 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거나 사망의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활동도 이철규 열사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사망의 원인이나 동기를 밝히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뒤집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측과 협조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 역사상 의문사 사건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권 차원에서 전력을 투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 등 일반수사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기들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처음부터 새롭게 수사를 전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법적인 책임추궁

법적인 책임추궁문제는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진실규명의 결과 타살로 판명이 된다면 직접적인 가해자와 그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왕의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증명되어야만 인정되는데, 사망원인이 자살이거나 단순한 실족사 등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연하게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심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거나 경찰에 의하여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다.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나 수사기록 일체를 입수하여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는데는 역부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수사결과를 뒤집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관련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 4. 결론

의문사 사건은 우리 역사가 한 번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자 아픔이다. 박창수·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의 사건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으로서 개별 사건에 관하여 추모사업회가 설립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고 수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문제를 제기한 몇 안되는 귀중한 사건이다. 피해자측에서 추모사업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전개하여 이 정도의 자료를 정리한 사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의 해결은 위 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위 네 사건을 재수사할 전담수사기구를 설치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피해자측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기 위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 의문사 규명에 있어서의 국과수의 한계

장임원(중앙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

## 가. 의문사의 특징

- \* 타살가능의 정황
- \* 사건발생목적자의 부재
- \* 수사기피 또는 은폐의 의혹

## 나. 의문사 규명을 위한 요건

- \* 사건 전후의 정확 파악
- \* 부검에 의한 의학적 소견
- \* 수사당국의 의문사 규명 의지

## 다. 의문사 규명의 내용

- \* 누가
- \* 언제
- \* 어디에서
- \* 어떻게
- \* 무슨 이유로

## 라. 의문사 규명에 대한 국과수의 한계

- \* 법의학적 소견제시에 그치는 제한된 역할
- \* 국과수의 구조적 비독립
- \* 법의학 전공자의 태부족
- \* 법의학 전문의 제도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기회의 부족

## 마. 개선대책

- \* 국과수의 구조적 독립 및 수사권 확보
- \* 법의학 전공자 확보 및 전문성 제고의 제도장치와 기회의 확대
- \* 정의로운 국가권력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천정배(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 1. 서론

의문사는 장기간에 걸친 독재정권 지배의 산물이다. 개개의 의문사 뿐만 아니라 김구 살해사건 등 우리의 역사에 있어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진상이 은폐되고 조작된 사건이 다수 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문사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의문사 문제는 바로 과거청산의 문제이고 역사왜곡의 시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라는 것을 자랑하는 김영삼정부는 군사쿠데타 단죄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등과 함께 반드시 의문사 문제도 해결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정권은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려면 반드시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의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인 청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진상조사를 담당할 주체(또는 기관)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진상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강제 조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구인 또는 구속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문사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과 국회가 있다. 검찰의 경우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가 전혀 없기에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검찰이 형사사건의 일부로서 의문사 문제를 수사하기에는 공소시효의 문제 등 현행법 상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국회의 경우는 의지, 능력, 권한 등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다.

먼저 '의지' 문제의 경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심조차 없는 신한국당이 다수이기에 이에 관련된 기관을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지난 번 한보청문회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으로는 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문사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가 구성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조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민여론의 수렴·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회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는 전문적인 수사 및 조사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국회, 대법원, 대한변협,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신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이 기구는 첫째, 검찰 수사권에 필적하는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기구의 협조 요청에 반드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사과정을 매 분기별 또는 월별 보고 등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3. 결론

진상규명 등 의문사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로만 과거청산을 외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김영삼정부하에서는 안될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권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 <제1주제 토론문>

##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의문사

허영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공동의장)

의문의 죽임을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살로는 인정 할 수 없다 라는 믿음 때문에 16년의 긴긴 세월을 사망의 원인과 죽인 자를 찾아 헤메이고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 과연 자살일까? 타살일까 하는 것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양심 선언이나 고백에서 밝혀진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지금에 와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으나, 부검 의학자가 사건 기록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는 확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군정 하에서 이루어진 녹화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각대학 학장에게 지도 휴학(일명 특수 학적 변동자)이라는 권한을 부여시키고 강제로 휴학을 시켜서 지원 입대케 하고 또는 시위 현장에서 강제 연행하여 입영시켜 죽여 놓고 부모가 나같이 무식하면 자살로 처리하고 부모들이 똑똑하고 법을 알면 사고 사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1988년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군대에서의 죽음은 군기 사고에 의한 사망자 2,670명이고, 안전사고로 죽은 군인은 3,723명 있다고 하였고 군기 사고 가운데 2,254명이 자살이고 폭행에 의한 것이 2백90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에 신고된 군대 의문사 관련자 18명중에 사건 기록이 있는 10명중 8명은 자살이 아니고 저네들의 철저한 거짓으로 인한 은폐 행위에 의하였다는 것을 부검 의학 서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 자체는 “부모의 무지”와 “국과수의 철저한 거짓말” “강력한 공권력”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135일이라는 긴 겨울 동안 기독교 회관 3층 세멘트 바닥에 모포를 깔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전경과 부딪치면서 줄기차게 투쟁한 결과 5공청문회에서 의문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급기야 특위일정이 잡혔으나 가해자 측 증인이 나오지 않고 TV중계도 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거부로 무산시키고 말았으며, 계속되는 농성 속에서 4명의 어머님이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발생되었다. 1990년부터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마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 대통령 김영삼씨는 3당 합당하기 위하여 직전에 여러 어머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힘이 생기면 꼭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옛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식언을 하는 인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바보였겠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안기

부법 철폐하고 특검제를 도입하라 하시던 분이 지금은 안기부법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석지변의 지조를 가지고 무슨 대안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검사제를 주창하며 야당3당을 방문하여 평민당 총재 김대중씨와, 민주당 총재 김영삼씨는 서로 자기 당의 주장이라 했었는데 유독 공화당 총재 김종필씨만은 특별 검사제를 반대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우리 의문사는 특별검사 제도가 꼭 필요 하느냐 하면 사건 당시에 관련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일을 재조사하며 그 진실을 밝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육군본부 범죄수사대를 방문하였는데 예하부대 누구는 몇 기생 누구는 동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선후배의 잘잘못을 파헤쳐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더러 “죽인 사람을 데려 오라”, “죽인 사람을 본 사람도 데려 오라” 했다면 얼마나 황당하며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지금은 육군본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답니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검사 지휘 아래 부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의 참여 하에 부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배제하고 사건을 처리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참여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찾아가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 유명 사립 필적감정소에서 필적을 감정한 결과 서로 상이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국립 과학 연구소에서는 동일 필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첫번째 자료를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각서 원본, 두번째, 세번째 자료는, 경찰서에서 쓴 각서와 진술서를 가지고 대조한다는 설명을 잘 하여 놓고 원본을 배제시키고 두번째, 세번째 자료만 가지고 필적을 대조하여 동일 필적으로 발표하여 버린 예가 있습니다. 우측 전 두부에 길이 15cm 크기의 두개골 파열 상이 사체에서 발견되었는데 두번째, 세번째 자료인 각서와 진술서를 써 줄 수 있었겠습니까?

부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연, 지연, 선후배 관련 때문에 선배의 잘못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기왕 죽어 버린 자를 위해 살아 있는 동료들 다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검 의사가 두개골이 크게 파열된 것을 모르고 지나칠 리는 없었고, 부검 의사가 “세상이 좋아지면 밝혀지겠지요” 라고 하는 말을 부친에게 하였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상의 사례로 보아 군, 검, 경이 모두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안이며, 80년 이후 군정 속에서 이루어진 군 총기 사고자 2,254 명에 대한 재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인명이라고 하는데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언젠가는 모두 다 같은 운명에 처한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경험한 내 아들, 허원근 사건을 소개한다면 1980년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으로 광주 항쟁에 참여한, 아니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봉기한 학교였다고 하며 전남지구 5.18항쟁에 참여한 학생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15명중 9명이 대동고등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81년 부산 수산대학에 입학하여 83년 3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한달을 학교에 다니다 지도 휴학에 의하여 83년 10월에 군에 지원 입대하였습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철책선에서, 앞가슴에서 어깨뼈를 관통하여 갈비뼈가 어깨 등뼈를 뚫고 나왔는데, 어떻게 팔을 움직여 다시 총을 잡아 자신에게 제2, 제3의 총을 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육군 과학 수사 연구소 대위 박

우의는 “총을 일곱 발이나 맞고도 살아 있다”고 하며 보여주라 말한 적도 있습니다. 좌측 가슴 총상에서 흘러나온 피는 검게 굳어 있는데 우측 가슴 총상에서는 붉은 색깔의 피가 굳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왜 피의 색깔이 서로 다르냐?”하는 물음에는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답을 하여 너 같은 사람에게는 부검을 거부한다고 하여 당일에는 부검을 못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아야겠다고 요구하여 사고 현장을 가는 조건으로 부검을 허락하고 나는 철책선에 가서 중대 본부 막사와 사고 현장 중간 지점에서 흘린 피를 발견하여 헌병 대장이 사병을 시켜 삽으로 떠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육군본부 범죄 수사대에서는 죽인 사람을 데려 오라 하는 말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사고 당시 10시52분에 총성 2발이 들렸다고 하고 사망 시간에도 10시52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개인별 진술 조서에도 10시 52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헌병대 조사서에만 9시30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동 수사자 헌병 준위 이해교는 주위에 탄피 2개가 있고 총에는 실탄이 13발(약실에 1 발)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병기계 손명조는 탄창 3개는 탄입대에 끼워 두고 주위 땅속에 실탄 1발을 흙속에 살짝 묻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대장 김석홍을 1988년에 만났는데 “아버님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중대 본부에 있던 자로 피복에 탄흔이 우리 아들 다음으로 많았던 일병 권오진을 만나서 우리 아들 다음으로 탄흔이 많이 있기에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하여 왔다 라고 경남 양산까지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나는 파견 근무자로 중대 본부에서 하는 자격해 본 일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탄약 검사가 엉터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1996년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탄원을 하여 여러 차례 보완 보정 가운데 자살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재조사하라고 하며 사건기록 일체를 육군본부로 이송한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시 수사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의문사 중에서 내가 탄원서를 쓰면서 목격하고 느낀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사(絞死)자는 2명으로 김용권 박필호는 사진 상으로도 목 전체를 한바퀴 도는 교흔(絞痕)을 볼 수 있는데 목을 매어 죽었다고 발표 하였는데 ‘목 전체를 돌아간 자육이 있는 것은 교흔으로써 자살이 아니다’라고 부검 의학 서적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2) 이이동, 노철승은 총살인데 사출구 보다도 사입구가 더 크다 라고 주장하는 육과수 부검의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이동군은 총구가 2개로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아버님이 한을 품고 자결하셨습니다. 총의 원리를 완전 배제하고 자연 법칙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박상구 하사의 죽음입니다. 우측 목 부근에 칼자국이 어머님이 손가락을 넣어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하였고, 좌측 어깨와 팔에 칼자국이 있고, 목에는 손가락으로 눌린 자육이 3개가 있고, 얼굴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고, 검안 장소가 부대내 영선반인데 농약을 먹고 신음하는 것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병원에서조차 방금 죽어서 들어온 사

람이냐고 간호사가 말했다고 한다면 자살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4) 최우혁 .박종근의 경우는 소사(燒死)로써 자료상에는 찾아 볼 수 없으나 박종근은 소방관이 사체를 끌어 낼 때까지 등뒤에는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고, 눈에 안경이 녹아 있었다는 것이 자살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 경찰에 자수시켜 군대에 보낸 최우혁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이 자기로 인한 것이라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강에 투신하여 자결하셨습니다.

5) 이상준의 경우는 6만 볼트 고압 전주에 올라가 감전 자살한 걸로 처리하였으나, 6만 볼트의 고압에는 사람의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전되었다면 재로 변하여 있어야 합니다.

6) 정연관은 87년 대통령 선거 시기, 군 부채자 투표시에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인데,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의 상관에 의한 구타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6월 국민 대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공포의 분위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군대내의 분위기에서 이를 거부하고 야당 후보를 찍은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7) 유가협에 접수되어 있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산재된 걸로 믿고 있으며 유격 훈련중 탈영 처리된 김소진을 10년이 넘는 오늘까지 혹시나 하는 기다림 속에서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낙엽만 뒹굴어도 아들이나 아닌가 하는 바람에서 문밖을 나가 본다는 부모의 마음을 국방부는 헤아려 국민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말로만 민주 군대라 하시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 하루 빨리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8) 군대내 의문사로 유가협에 접수된 사건은 82년1명, 83년 5명, 84년 1명, 87년 9명, 88년 2명등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의문사로 유가협에 접수된 18명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문영수, 김상원, 신호수, 김성수, 우종원, 정경식입니다.

가) 문영수는 82년8월19일 전남 광주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불명되어 그 동생 문덕수가 각 병원을 수색하여 전남 대학교에서 행려환자로 취급하여 대학 실습용으로 사용한 형의 사체를 찾고 연행 경찰관을 고발하였으나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연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김상원은 86년 5월 16일 사망하였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 안에서 3명의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후 실신하자, 서울 시립 병원에 행려 환자로 입원시켜 식물 인간이 된 상태에서 70여일 만에 동생 김상모가 찾았으나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말도 들을 수 없이

운명하였습니다. 동생의 끈질긴 노력과 박원순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국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경찰은 위증죄로 고발하여 8년의 형을 받았고 구타하던 경찰관을 기소하였으나 완강한 거짓으로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나 위암으로 수술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 신호수는 방위병 근무 시절 뼈라 수집으로 인하여 장흥1호 작전의 대상에 올라 7개월 동안 수배중 부친 신정학에게 주소 확인 이후 경찰관 차덕수가 인천 연안가스에서 연행한 뒤로 30분 후에 여비 2,000원을 주어 서울역까지 보내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여수 돌산 대미산 정상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 새마을 지도자가 처음 목격하고 진술한 내용에 흰 양말이 시뻘건 피로 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양다리에는 굵힌 자욱이 1-2cm 깊이로 움푹 패여 길게 있었다 하는데 혼수상태에서는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8개월만에 부모의 입회 없이 재부검한 사진의 머리 부분을 400% 확대한 결과 오른쪽 두개골이 크게 손상을 받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호수의 죽음 처리과정을 경찰청 교본으로 사용하였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허대가 팔 관절 아래가 묶여 있는 점과 신발에 혈흔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팔 관절 아래는 자기가 혼자서 묶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목을 매고 난 후에 팔을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는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관절 아래를 묶었다면 제3자는 바로 경찰관 차덕수입니다. 신발에 혈흔이 없다는 말은 신을 신지 않고 산에 올라갔으며, 누구에겐가 들려 가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손을 대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두에도 혈흔이 있어야 합니다.

라) 김성수는 서울 대학생으로 전화로 부름을 받고 나간 후 부산 송도 앞바다 방파제에서 익사체로 발견 인양하여 위와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됨으로 자살로 경찰이 발표하였는데 사후 익수도 위나 폐에서 플랑크톤이 있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마에는 붉은 색의 피가, 입가에는 검은 피가 굳어 있는데 두개골에서 피하에 출혈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등을 볼 때 익수시에 생겼을 것이라는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익수 이후에는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무시하고 조사한 것이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마) 우종원 역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깃발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중 학생으로 철로변에서 발견 추락사로 발표하고 있으나, 12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하였다면 머리에 조그마한 외상 외에는 아무 상처가 없겠는가 하는데 착안하여 가족의 진술을 듣고 보니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슴에 멍이 들어 있다는 것은 소생 시술을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바) 정경식은 창원 대우 중공업 노동자로 노조 지부장 선출 이후 불협화로 인하여 제2공장에서 1공장으로 불려 간 이후 행방 불명이 되어 백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었고, 실종 10개월 이후 천주산에서 습득한 유골을 놓고 기자회견을 하려던 하루 전날인 88년 3월 2일에 발견 된 점이고, 이 장소는 87년 가을 친족, 마을, 사람을 총동원 하여 수색할 때 정경식의 삼촌이 그 돌 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었다는 밤나무 밑에 밤을 따던 대나무

(홀대)가 있었다면 지난 가을에 발견했어야 하고 어떻게 약한 가지에 목을 맬 수 있겠느냐고 항의 하자 나뭇가지를 잘라가 버렸다는 것이고, 사방에 흩어진 뼈를 본 부검 의사가 뼈에 짐승이 침범한 흔적이 없다라고 하였다면 무엇이 뼈를 옮겨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뼈는 당연히 옷속에 뼈가 있어야 하는데 옷 위에 뼈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8개월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성실한 조사를 하였다면 한편의 수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만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마) 이태춘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 조치에 반대하여 6월 18일 민주화 투쟁 당시 5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부산시 좌천동 소재 육교를 통과하던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 6월 26일 사망하여 부산 시민장으로 영결하였습니다. 부산 시청 등의 보상 요구에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독재하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거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민 정부가 도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자리 매김할 정치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 시장 문정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광일씨 등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건만 죽은 자의 공은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사건들이 사체를 유기하였고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불을 질러 버리는 등 악랄한 수법 등이 있습니다.

## 제2주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의 역사적 자리매김과 정신계승 방향

배동인(강원대학교 교수, 사회학), 박래군(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

## 1. 문제제기

한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달에 87년 민주항쟁 1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립 이래, 특히 1961년 5.16 군사구테타 이후 오늘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주독립국가와 민족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가 투철한 국민대중들은 고난어린 투쟁을 지속해왔고 고귀한 생명을 바치거나 희생당했다. 노동자들,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젊은 이들이 분신하거나 투옥되어 옥사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은 결코 개인적 이해관심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극한적 투쟁의 몸부림에서 초래된 역사적 사건들이었으며 '민주공화국'의 탈을 쓴 독재정권들의 '공권력' 아닌 폭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오늘 우리가 매우 저열한 수준이나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일반국민들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잡혀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도 이들의 죽음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지 않는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그들의 죽음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삶의 빛으로 되새겨진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민족사의 시각에서 올바르게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크게 보아 과거사의 정리작업에 해당하고 가까이는 현대 정치사의 한 주요부분의 국민적, 따라서 국가적 평가와 정립이라는 과제임을 뜻한다.

## 2.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의 역사적 자리매김 문제

2.1. 민족민주열사들과 희생자들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간주한다면 우선 이 '사실'의 객관적 서술과 규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사실의 역사적 평가, 곧 의미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의 실정에서는 아직 이들 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조사작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열사들과 관련된 재야단체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유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특정 열사 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협의회'(추모단체연대회의) 등에서 열사들의 관련기록수집, 추모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추모단체연대회의에서 집계한 '열사'(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를 포함하는 포괄개념)는 316명인데, 사망의 원인별로 구분하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죽음(자결)으로서 분신 70명, 할복 1명, 투신 10명, 음독 2명, 목매 5명 등 88명이며 타의에 의한 죽음으로서 타살 14명, 옥사 85명, 의문사 47명, 병사 56명, 사고사 26명 등 228명이다. 직업별로는 1) 노동자 전태일(1970) 등 92명, 2) 농민 엄동익(1985) 등 4명, 3) 학생 김상진(1985) 등 59명, 4) 도시빈민 이재식(1989) 등 9명, 5) 재야인사 기종도(1982) 등 22명, 6) 시민 이정순(1991) 등 4명, 7) 장기수 권창수(년도미상) 등 101명, 그리고 8) 군경 정성희(1982) 등 25명이다. 이 통계에서는 광주민중항쟁 기간 중에 사망한 이들이나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삼청교육대와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열사들의 죽음의 시기별 발생빈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시기에 66명, 전두환 정권시기에 78명, 노태우 정권시기에 110명, 김영삼 정권시기에 58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 아래서는 옥중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숫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특히 사상문제로 수감되었거나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수감된 장기수들에게 가해졌던 고문과 인권유린(사상전향 공작)이 매우 강도높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시기에 그 이후의 열사들의 투쟁의 전형을 이루는 모든 형태들이 나타났다. 곧 분신(전태일), 할복(김상진), 투신(김경숙), 의문사(최종길), 사형(인혁당) 등의 형태들이 모두 발생했고 이후 정권들의 시기에도 이런 다양한 죽음의 형태들이 계속 나타났다. 가장 극단적인 투쟁의 형태인 자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전두환 정권 때인데 이 시기에 분신이 17건에 이르렀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분신이 2배 이상 증가한 36건,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도 16건이나 되었다.

이들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공통의 성격은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 민주주의의 실현, 조국통일의 성취에 대한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었다. 그것은 각 정권의 반민주성과 폭력지배체제에 대한 직접적이며 격렬한 저항을 죽음의 형식으로써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독재정권은 이들의 죽음을 묵살하였고 인권탄압상황과 반민주적 정치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계속 이어졌고 억압의 방법도 정교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비판적 의견표출의 길이 완전히 막힌, 극심한 언론통제 아래 오직 획일적 관제언론만이 휩쓸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한 박정희 시기에 비인간적이며 불의한 노동현장의 실상을 폭로하며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분신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절규한 것이 1970년 전태일의 분신사건이었다. 전태일 군이 문자 그대로 자기 몸을 불태움으로써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정도의 당시의 박정희 정권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의문사의 경우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비판적 의견표출이나 집회에의 참여 등을 불법시하여 당국에 연행되어 이른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가해진 잔인한 고문 등에 의해 타살된 사실을 자살 등으로 은폐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의 은폐와 조작은 폭력지배체제로 전락한 박정희와 그 이후의 독재정권들의 일상적 기본업무에 속하는 것이었다. 폭력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증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옥사의 경우는 대부분 인간의 생각, 특히 특정의 정치적 사상을 견지함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독재정권의 위헌적 작태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사상전향의 공작대상이 된 장기수들이 당한 고문의 후유증이 악화되어도 치료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치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군사독재정권 아래서의 인간존엄성과 인간기본권의 실종, 민주주의의 파괴, 사회정의의 형

해화, 국가권력의 폭력화의 비극적 사회현실을 열사들은 죽음으로써 만천하에 고발한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운동조직의 미숙성으로 말미암아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시기에는 열사들의 죽음형식은 운동강화와 선도적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운동역량의 발전과 더불어 침해화된 문제의식의 관철방법으로서 열사들의 죽음이 잇따르게 되었던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도 58건의 죽음이 발생했고 그 중에 분신이 16건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개인적 결단에 따른 죽음이라는 극단적 저항방식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김정권 아래서는 여론추종의 소극적 태도로나마 잘못된 과거청산의 시도와 제도적 개혁추진의 의욕표명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개선노력이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러한 정치적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과 그 효과의 미약함을 인명경시와 자포자기의 사회풍조나 정치적 냉소주의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2. 위에서 열사들의 죽음과 그 역사적 문제상황을 대강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죽음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시기획정의 문제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언제까지 한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정치적 죽음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데에 있다. 아마도 국가와 정부가 완전히,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민주화되기 전에는 새로운 열사의 죽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2) 명칭(개념)의 적용문제이다. 열사, 의사, 지사, 희생자 등 다양하게 일컬어진다. 다양한 명칭이 필요하다면 그 적용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희생자'의 범주에는 타살, 의문사, 옥사, 사고사, 병사 등 주로 타의에 의한 죽음의 경우들을 포괄하는 듯하나 각각 그 이유와 정황과 당사자의 주장과 행위 등에 따라 민주유공자 또는 민주희생자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민족민주'라는 수식어도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사례의 조사가 더욱 철저히, 그리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316명이라는 통계가 완벽한 것인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금 범주와 평가기준의 설정이 전제된다.

4) 열사들의 역사적 자리매김은 국가적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다음 정권의 의지와 실천력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으나 그 실현을 앞당기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주요정책문제로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열사들의 정신과 의미

열사들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거나 희생당했다. 열사들의 공통된 정신과 삶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3.1. 생명초월의 가치지향성

무릇 모든 생명체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의 생명보존, 곧 자기보존이라는 원초적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 가장 기본적, 보편적인 욕구를 전제로 하여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생존해 나간다. 특히 인간은 진, 선, 미, 평화, 정의 등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을 그 삶의 내용으로 삼는다. 그런데 만일 한 인간이 이들 가치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는 자기자신의 생명, 곧 자기존재 자체를 버림으로써 그 어떤 가치를 실현코자 한다면 이것은 자기모순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드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열사들은 후자의 생명초월의 가치를 실현코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진 것이다.

### 3.2. 인간해방의 철학

열사들은 인간해방의 횃불이었다. 그것은 개인적 해방이 아니라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횃불이었다.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궁극적 자유에 대한 갈구를 외치는 행동의 언어였다. 그것은 부자유와 억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의 절규였다.

### 3.3.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의 제기

열사들의 죽음은 폭력지배체제로 전락한 정권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권력이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 존엄성을 유린함으로써 폭력화한 현실을 직시한 열사들은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며 폭력국가의 총체적 변혁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민주국가 건설문제의 절박성을 몸의 횃불로써 외친 것이다.

### 3.4.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그 영향의 상승효과

열사들의 죽음은 당시 처한 상황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전태일의 죽음으로 인해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전체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게 했으며 그 이후 노동운동에 적극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졌다. 그 뒤에 박종만, 박영진 등 노동자의 죽음은 1980년 이후 노동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김의기, 김종태, 김태훈 등의 죽음은 광주학살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며 80년대 내내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하였다. 또한 김세진, 이재호의 죽음은 미국제국주의의 문제를, 조성만의 죽음은 조국통일투쟁의 활로를 여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열사들의 죽음은 반민주적인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죽음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독재정권들은 시신을 탈취하거나 돈으로 유가족을 매수하거나 장례행렬을 저지하는 등의 온갖 치졸한 술책까지 종종 사용했다.

## 4. 열사들의 정신계승의 방향

### 4.1. 열사기념, 정신계승사업의 현상황

현재 열사들을 기리는 작업은 세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열사들의 유가족들로 이루어진 유가협을 통해 가족을 잃은 피해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한동안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으며 민가협과 더불어 피해자

집단의 운동을 개척해 갔다. 특히 의문사 문제의 경우에 유가협이 거의 떠맡고 있다시피한 상태이다.

둘째로 개별 열사의 추모사업회의 움직임이다. 몇몇의 경우는 단순한 추모사업회나 기념사업회의 한계를 넘어 부문운동을 일구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가령 7,80년대에 합법적인 운동공간이 없던 때에 전태일열사 기념사업회는 한 명의 열사를 기리는 사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열사들의 경우에 각각 추모사업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열사들이 처했던 조직적인 관계나 기반의 유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열사별 추모사업회는 결성 초기에는 추모비 건립, 자료집이나 문집의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차츰 동력이 떨어지고 매년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조직유지에 급급하게 된다. 개별 추모사업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운영의 한계는 명확하며 앞으로의 활동방향의 설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셋째로 열사들을 전체적으로 기리는 활동으로서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 갖는 추모식 정도이다. 1990년부터 진행되어온 합동추모제가 있으며 1996년부터는 추모단체연대회의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열사들의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개별 추모단체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높이려는 노력이 경주되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열사들의 추모, 정신계승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먼저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이들 열사들의 죽음에 많은 음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을 차츰 잊어가는 경향이 있고, 다음으로 열사들의 숭고한 죽음의 의미를 민족사적 시야에서 제대로 인식할 줄 아는 진정한 민주정부를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 모두가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 4.2. 열사들의 정신계승의 방향

열사들의 정신계승의 올바른 방향은 위에서 논의한 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자리매김이 올바르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열사들의 정신계승은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거족적으로, 그리고 거국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1) 정부는 열사들의 숭고한 죽음이 민주국가 건설의 초석임을 인식하여 각 열사의 의거의 장소에 유적비를 세우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 역사적 교훈으로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

2) 정부는 모든 열사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여 국가적으로 추모하도록 해야 한다.

3) 열사들의 역사적 행위가 국정 교과서에 수록되고 각 교과과정에서 그 숭고한 정신이 가르쳐져야 한다.

4) 열사들의 정신선양회(가칭)가 유족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어 민주주의의 정치의식과 민족공동체의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정치교육과 사회교육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 원칙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입법절차를 거쳐 실시되어야 한다.

1)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열사들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신고의 접수, 열사들의 '민주유공자'(가칭)로서의 인정기준의 설정과 대우방식 등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인사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모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2) 현재 흩어져 있는 열사들의 묘역을 한 자리에 모아서 민주유공자 묘역을 설치해야 한다. 4.19 국립묘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가묘라도 설치해야 한다. 기념관도 건립해야 한다.

3) 위의 1)항과 관련하여 열사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지급 및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한 열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정도의 보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4) 열사들의 정신을 거국적으로 기리는 동시에 그 정반대의 측면에서 독재권력자와 폭력지배체제의 유지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공직 및 서훈의 박탈과 처벌이 역시 거국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릇된 과거의 청산운동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저항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원래의 자리나 요직을 그대로 차지하는 상태에서는 열사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이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의 핵심부와 언론기관의 요직에 있으면서 열사들의 저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왜곡시켰던 인사들, 경찰이나 안기부 등에 몸담고 있으면서 선량한 민주시민과 열사들에게 잔학한 고문과 폭행을 가했던 자들, 부당한 기소와 판결로써 고귀한 목숨을 잃게 한 사법부의 법복을 입은 권력의 노예들이 청산의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청산의 민족적 과업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지상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범시민사회의 차원에서 광범한 시민체제가 참여하는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사업회'(가칭)를 구성하여 과도기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사업회 구성) (1978년 12월 15일)

열사들의 죽음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제기한 민주국가의 건설과 민족통일의 과제들이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와의 싸움에서 폭력화된 불의의 권력 아래 선량한 민주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불행한 처사이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건설할 미래의 초석을 허물어뜨리는 노릇이다.

어둠과 불의의 장막이 아직 완전히 견히지 않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땅의 우리는 과거의 반인간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독재정권에 의해 대부분 피지 못한 꽃망울로 꺾여 스러져간 열사들의 죽음의 의미를 최대한 널리 홍보하고 기리는 일에 정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해방된 삶으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열사들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다.

# 옥중희생자 문제

권오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 1. 머리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회의에서 옥중희생자(사형수 포함)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제까지 거의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데서,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서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뜻있는 일만큼 손쉽게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70년대초 전태일 열사로부터 최근 류재울열사에 이르기까지 이땅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그리고 민중생존권과 사회정의의 위해 현장에서 산화해간 모든 열사·희생자들과는 달리, 옥중희생자들은 국가권력의 사법판단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이른바 '반국가사범'으로 분류처분되어 복역중 목숨을 잃었기에 이 학술회의 주제가 뜻하는 희생자 명예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법평가와는 다른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고, 옥중희생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어떠한 관계당국의 공식문헌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떠한 가치도 영원한 것만은 아닌 듯이 사법평가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 12.12와 5.18에 대한 사법평가에서 보여주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던 검찰이 같은 사건에서 다시 '군사반란죄'와 '내란죄'로 공소제기한 예와 80년 광주민중항쟁지도부에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법부도 전.노 신군부에게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최종단죄한 사실들이다. 물론 고소고발인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와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결정적 받침이 있었지만 '폭도'와 '진압군'에 대한 사법평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법치국가에서 소송당사자는 사법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법의 판단과 운용이 권력이동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땅에서 있었던 모든 사법평가들이 모두 정당했다고만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사법판단만이 절대적일 수도 없다. 정의, 도덕, 역사적 평가는 따로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옥안에서의 잔혹했던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부당한 처우에 항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놀라운 일들이 당국의 부정과 은폐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역했던 이들의 증언으로 상당부분 드러나게 되었다. 비록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인정하는 공식문헌은 아니지만



특정사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증언내용이 한결같이 실제적 진실을 가리는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발제는 이미 1차 학술회의 자료에 실려있는 감옥안 희생자(사형수)들 가운데 정치수(범)로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 사건들에 대한 가치판단에 앞서 사형제도 특히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사법처형되는 사법체계의 문제점과 그 사건들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을 알아보려 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로 희생된 전형적 사례들과 고문과 사상전향제도를 고발하는 뜻으로,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음을 밝힌다.

## 2. 정치수에 대한 사법처형사례

인간이 정치적 조직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어느 시대에서도 정치적 피해자는 있어 왔다. 단순한 권력쟁탈전쟁에서 종교, 인종, 이념, 체제, 정책경쟁 등에 이르기까지 패배당한 집단은 때로는 반역으로 몰리어 처단되었다. 해방된 이 땅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가고 처형당하는 구조적 요인 가운데는 1차 학술회의에서 김봉우 발제자의 주장처럼 “그 많은 희생자와 정치범을 만들어낸 구조는 내재적인 이념갈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폭력으로 지배하면서 이익을 추구해가는 「외세구조」 일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승만 백색독재와 군사독재치하에서 사법살인당한 애국자들의 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한 김삼웅 발제의 「독재체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외세의 남북진주로 그어진 「분단구조」가 또 하나 중요요인이었음도 틀림없다. 국토분단은 민족과 체제와 이념대립을 강제하였다. 해방공간 가장 큰 민족적 과제였던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과는 정면배치되는 상황이었다. 사상과 이념·체제를 넘어 하나의 자주독립국가를 지향했던 세력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외세를 업고 분단을 악용 독재를 강화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과 자주민주통일세력을 탄압하였다. 그 탄압수단으로 국가보안법(1948)과 반공법(1961)이 제정되었다. 이 두법은 이른바 좌익척결과 사상통제의 중요한 두 축이었고 분단고착과 독재를 강화시키는 반민족반민주악법이었다.

이승만독재아래에서 그리고 군사정권들에서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한 이들은 바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였다. 이 두법의 위력이 어떠했는지는 몇가지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같은 해 11월 25일 현재까지 867명이 사형선고 받았으며 (동아일보 1950. 11. 25자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953. 7. 27. 휴전협정이 되고 지방형무소에 수감되어있던 (1심에서 사형선고받았던) 150명(대전 80, 공주 50, 마포 20명)이 서울형무소 이감은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도 있다. 이 증언에 의하면 그 가운데 김홍직(1977년 감호소에서 옥사)씨와 다른 한 사람만이 집행을 면했다고 했다. 1961년에서 1980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1,968명이었고 반공법 위반혐의자는 4,167명이었다. (같은 책) 또한, 1958년에서 1961년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593명이었고 사형선고 받은 수는 53명이었다(동아춘추 1963. 1월호 권순영). 1964-1987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138명으로 나타났다(사법연감-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 항소심과 대법원확정에서 그 수는 줄을 수도 있겠지만 군사정권시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1심선고에 대한 항고는 대부분 기각되는게 일반적이었음에 비추어보면 비록 일부 감형조치가 있었다해도 사형집행당한 수가 적지않은 것으로 어렵된다.

다음 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대 정당 또 정치결성체로서 그 정책이나 (통일문제)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처형된 사건별 명단과 그 혐의내용이다(여기 올려있는 이름은 1차학술회의 자료집에 실려있는 희생자명단에서 뽑은 것이다).

표1> 사건별 처형자형의 및 법 적용

| 사건명            | 성명   | 집행년월일       | 혐의내용   | 법적용   | 재판부   | 비고  |
|----------------|--|-------------|--|---|---|---|
| 진보당사건          | 조봉암  | 1959.7.31.  | 평화통일론<br>간첩 금품수수                                     | 국가보안법<br>1조1항<br>형법38조1항등                                       | 1심 서울지법<br>형사3부 재판장<br>유병진  | 1심, 간첩죄무죄, 징역5년<br>진보당위원장   |
| 민족일보사건         | 조용수  | 1961.12.21  | 반국가단체<br>고무,동조                                       | 특수범죄처벌에<br>관한 특별법<br>6조 형법 30조                                  | 혁명재판소 심<br>판부 제2부 재<br>판장 김홍규   | 민족일보사장  |
| 중앙사회당사건        | 최백근  | 1961.12.21. | 자주,평화,통일<br>반국가단체 고<br>무,동조                          | 특수범죄처벌에<br>관한 특별법<br>6조 형법 30조                                  | 혁명재판소 심<br>판부 제3부 재<br>판장 김정운   | 중앙사회당 조직위<br>원회 조직부장<br>합법정당이었으나<br>군사혁명으로 모든<br>혁신정당 불법화                               |
| 통일혁명당사건        | 김종태<br>김질락<br>이문규                                    | 1967.       | ○노동당입당<br>○잠입 탈출<br>○공작금 수수<br>-외-                   | 국가보안법<br>반공법<br>형법 -외-  | 1심 서울지법<br>합의6부 재판장<br>이상원<br>1심 서울고법형<br>사부<br>재판장 윤운영   | ·통혁당 당수<br>·통혁당 민족해방<br>전선책임비서<br>·통혁당 조국해방<br>전선 책임비서                                  |
| 인혁당재건사건        | 서도원<br>도예종<br>하재완<br>송상진<br>이수병<br>우홍선<br>김용원<br>여정남 | 1975.4.9.   | ○민청학련<br>배후조종<br>○내란예비음모                             | ○대통령<br>긴급조치 1,4호<br>○국가보안법<br>1조2항의<br>○방공법4조1항의<br>○형법 90조1항의 | 1심 비상보통군<br>법회의<br>제2심판부<br>재판장 육군중<br>장 박현식<br>2심 비상보통군<br>법회의<br>재판장<br>이세호<br>대법원. 전원재<br>판부 | 1심 1974. 7. 11.<br>2심 1974. 11.4.기각<br>대법 75. 4. 8. 기각<br>4.9. 집행<br>민청학련 사건으로<br>판결문기재 |
| 남민전<br>(준비의)사건 | 신항식  | 1982.10.8   | ○반국가단체<br>구성가입<br>○반정부활동<br>비라살포<br>○구성원과<br>회합,통신 외 | ○대통령<br>긴급조치9호<br>○국가보안법<br>1조2항의<br>○반공법<br>4조 1항의<br>○형법 외    | 1심<br>서울형사지법<br>합의13부<br>재판장 모영택  | 1심 1780. 5.4.<br>2심 1980. 9.5.<br>대법 1980. 12.21<br>남민전 준비위 중앙<br>위원                    |

위 도표에 있는 사례들은 사건마다 배경 성격 혐의점 활동내용이 다르지만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한 점은 모두 같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 북과 관련되었다해도 구성원 대부분이 학생, 지식인, 통일운동 활동가들이었고 폭넓은 사회대중들이었다. 진보당과 중앙사회당은 합법정당이었으며 민족일보사도 합법적 제도언론사였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 혁명공약시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긴급조치와 위수령, 국가보위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유신시대에는 종교집회 설교집까지도 긴급조치위반혐의의 대상이었다. 비공개된 정당 정치결성체는 이같은 공안조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안조건이 아니고, 사상, 양심의 자유, 단체결성의 자유,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는 조건이었다면 비공개될 이유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이 사건들 일반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나 활동은 더욱 유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선진 민주사회의 진보세력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 예측도 하게 된다. 얼마전 영국과 프랑스에서 보수집권당과 진보야당사이에 총선을 통한 정책대결을 벌였던 예에서나 대부분의 서방선진국들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이 아무 제약없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이땅에서 벌어졌던 정치적 사건에서의 사법처형은 정치적 후진성과 사법체계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가치판단연구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서의 사형집행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일이다.

먼저 제기될 문제는 사형제도 그 자체이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도 지난 60년대 큰 논쟁이 벌어졌었다. 카톨릭사제였던 윤형중신부(당시 한국순교복자원신부)가 「처형대의 진실」이라는 논문에서 '정의가 파손되면 그것이 보복되어야 한다' 등 4가지 조건을 들어 사형제도의 불가피성을 발표했다(동아춘추 1962. 12월호). 이에 맞서 서울지법소년부지원장이었던 권순영판사가 「윤신부의 소론을 반박한다」(같은 책 1963 1월호)는 반박문에서 '법률은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천한다'는 등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동서고금 사상체계를 들어 논증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성직자였던 경동교회 강원룡목사도 뛰어들어 사형폐지론을 옹호했었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폐지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범죄를 용보로 다스릴 수 없다는 점,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기능을 갖고있지 않다는 점, 재판의 우려, 사형이 범죄억제력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범죄원인이 사회환경적 원인도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1997년 3월 현재 100여개나라에서 법률상 또는 실무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한다(이달의 민변-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적 현황. 김일수). 사형제도에 대한 이같은 세계의 추세를 본다면 정치적 이유 바로 정치수(또는 확산수=양심수)에 대한 사형은 더욱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정치수는 살인, 강도같은 파렴치범이 아니다. 정치적 소신(양심)으로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옳다고 판단하였기에 확산을 가지고(확산수는 파렴치범과 대립되는 도덕, 종교, 정치적 의미의 확산이 결정적 동기가 되어 행해진 범죄로 옥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1923년 독일 라트브루흐(Radbruch)에 의해 창안) 행동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정치수를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은 부당하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강조하고 사형제도를 부정한 정신, 그리고 1977. 12. 8.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사형폐지론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도표1에 있는 사건관련자도 사형제도 일반론이나 정치수의 사법처형 부당성에 예외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사건들은 백년이 넘는 외세의 시달림을 당했고 수십년의 분단을 겪으며 민족적 고통을 당해온, 우리 민족이 떠안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한결같이 반외세민족자주와 반독재민주화 그리고 평화적 재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한 예로 민족운동에 입각한 민주연합운동의 추진을 전략적 사고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남민전은 반독재민주화의 제한된 시야에서 전개되어온 재야, 학생운동의 인식지평을 넓히고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사회운동전반에서 제기되고 토론된 것은 1980년 광주항쟁의 '역사적 집단경험'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은 1980년대 중반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통일이라는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로 정립되어갔다(남민전연구 인병용 역사비평).] 사건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진보당), 사건조작(인혁당재건)으로 또는 군사재판으로(중앙사회당 민족일보)유신시대 긴급조치시대(남민전-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기도 했다.)에 일어났다. 북과 관련된 통혁당 경우에도 구성원 대부분이 4.19와 6.3투쟁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었고 "통혁당을 구성하고 있던 성원들은 '「전략적 독자성'과 '현실적 지원'의 긴장에도 불구하고-통혁당을 독자적인 '남한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독자적인 당'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평이 있었다(6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연구, 조희연).

### 3. 감옥에서의 부당행위와 희생자 실태

여기서 말하는 옥중희생자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군형법, 국방경비법 등 위반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 그리고 사회안전법(1989. 5. 29)으로 감호처분되어 구금중에 교정당국의 사상전향을 강제하는 과정(고문 등)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그러한 고문후유증, 또는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하여 장기구금상태에서 얻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이다. 또한 사상전향강제 등 잔혹한 처우에 항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정치적 신념(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자결한 사람들이다. 이같은 옥중희생자가 있게된 근본이유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라는 말이 상징하듯 반공, 반복이 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의 토대라는 분단논리, 냉전논리에 있고, 직접원인으로는 사상전향제도와 그것을 실현키위한 고문만행에서였다. 사상전향제도는 이른바 '좌익수'들을 공산주의 또는 불온사상포지자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상을 포기하고 반성하며 체제에 열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서화하여 "전향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게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상전향과 관련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형자분류 처우규칙"(법무부령 제111호-92년 3.23. 법무부령 361호로 개정)이 있다. 이 규칙(개정 전 누진처우규정)은 수형자의 작업성적, 소내생활 복역연수 등에 따라 4급에서 1급까지 나누어 승급케 함으로써 처우를 완화하고 가석방 등 특전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케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확신범으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1992. 3. 23. 개정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개선의 정이 없는 자”로 했는데 이는 확산범에 대한 사상전향강요로 인권단체들의 공격을 면하려고 표현을 바꾼 것으로 해석됨)는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법령 2조1항5호) 비전향 양심수는 영원한 무기수로 40년이 지나도 80살이 가까워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 싸웠던 서준식씨는 전향제도에 대해 ① 비인간화의 체계 ② 인간의 긍지를 파괴하는 체계 ③ 이간(離間)의 체계라고 통렬히 비판했다(장기복역 양심수 실태자료집 민가협).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전향공작이 가장 두드러졌던 때는 1972.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부터였다. 1973년 3월쯤엔 전향공작, 교회사가 공개채용되었고 7월엔 각 교도소에 배치되었다. 다음은 전향을 강제하기 위한 가혹행위의 사례들이다.

- 독서, 서신, 면회, 영치금 사용, 운동, 목욕 등 전면금지 통보

- 0.8평 독거감방에 8-10명까지 수용

- 항의단식하자 살인강도 등 파렴치범 깡패에게 수감, 몽둥이, 포승, 감방 열쇠를 갖고 있게 하여 마음대로 구타와 물고문 등 자행했다.

- 앉은 자세가 흐트러졌다거나 비상구급약품 등을 갖고 있었다하여 식구통에 손바닥을 내놓으라 하여 끈봉으로 내리치고 세면바닥에 꿰어 앉혀놓고 끈봉으로 구타.

- 초겨울인데도 관담요 한 장만 남긴채 침구류 모두 빼앗아감. 팬티 하나만 입게 하고 (변치수씨 74년 고문으로 사망) 손을 물통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침구없는 방에서 3-4일 지내게 함 - 구타와 물고문(고추가루)

- 세면장에 끌고가서 발가벗겨놓고 찬물을 끼얹으며 끈봉으로 구타(임병호, 이봉노)

- 긴의자에 누워 의자밑에 양팔을 돌려 수갑을 채우고 전신 묶어 놓은 다음 목을 제껴 젖은 광목 수건을 얼굴에 덮고 10ℓ 짜리 주전자물을 코와 입에 붓는 고문(장기복역 양심수 실태자료집 민가협)

글 머리에 말했듯이 옥중희생자 실태는 공식문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출소자의 증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 희생자 이름말고는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병사의 경우 병명 등) 사망장소(교도소) 등을 전혀 알 수 없거나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옥중희생자 문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 내용과 같은 불법고문이 자행된 일, 사상전향강제행위, 장기구금, 부당한 처우(독방 또한 작은 방에 여러 명 합방, 운동, 목욕, 서신, 면회, 영치금 사용 등)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다.

이제 옥중희생자의 몇가지 통계를 보면서 희생의 전형적 사례를 들기로 한다.

## 표2> 사망연대별

| 사망연대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알수없음 | 모두 | 비고                    |
|------|------|------|------|------|----|-----------------------|
| 사망자수 | 14   | 43   | 17   | 5    | 79 | 70년대는 전향공작이 가장 심한 때였음 |

\*표2-표6에 나타나는 사망자 수는 79명이지만 실제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이 통계가 작성되고서도 4명이 늘어났음).

\*사망연대에서 70년대가 가장 많은 것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비전향장기수 전원에 대한 강제전향공작이 시작된 일과 무관치않다. 1973년 7월부터 74. 5월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비전향자 64명 가운데 39명이 강제전향당했다(장기복역양심수 실태자료 민가협).

## 표3> 사망(희생)원인별

| 사망원인 | 강제급식 | 자살 | 굶어 | 단식, 고문후유증 | 고문치사 | 병사 | 알수없음 | 모두 | 비고 |
|------|------|----|----|-----------|------|----|------|----|----|
| 사망자수 | 4    | 10 | 3  | 31        | 5    | 15 | 11   | 79 |    |

\* 사망원인에서도 전향공작 원인이 압도적이다. 강제급식, 자살, 굶기, 고문치사 등이 직접원인이고 단식과 고문후유증이 간접원인이라 할 수 있다.

## 표4> 사건유형별

| 유형   | 정치공작 | 빨치산 | 안내 | 일본경유 | 알수없음 | 모두 | 비고 |
|------|------|-----|----|------|------|----|----|
| 사망자수 | 33   | 17  | 7  | 1    | 17   | 79 |    |

\* 사건유형별에서 정치공작은 남쪽 출신으로 전쟁 때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와 북쪽 출신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다. 정치공작에서도 남쪽 출신이 훨씬 많았다. 일본경유는 일본에서 잡혀 오무라 수용소를 거쳐 남한으로 이송된 경우이다.

## 표5> 출신지별

| 출신지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부산) | 전북 | 전남 | 제주 | 북에서 | 일본인 | 알수없음 | 모두 | 비고 |
|------|----|----|----|----|----|----|--------|----|----|----|-----|-----|------|----|----|
| 사망자수 | 4  | 7  | 3  | 3  | 4  | 6  | 6      | 7  | 11 | 1  | 13  | 1   | 13   | 79 |    |

\* 출신지역별에서는 전남북과 경남북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특히 전남지방이 많았다. 일본인은 河野清씨로 일제 때 일군에 징집, 관동군으로 있다가 소련군에 잡혀 수용소에 있다 나왔으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 인천에서 출소. - 다시 감호소에 잡혀온 사람으로- 자살했음.

## 표6> 교도소별

| 교도소  | 대전 | 대구 | 전주 | 광주 | 감호소(대전,청주) | 알수없음 | 모두 | 비고 |
|------|----|----|----|----|------------|------|----|----|
| 사망자수 | 23 | 17 | 7  | 11 | 16         | 5    | 79 |    |

\*교도소별에서는 비전향장기수가 가장 많았던 대전교도소가 단연 많았으나 전향공작은 어느 교도소에서든 가혹하게 집행되었다.

이제 그 악명높았던 사상전향공작에서 전형적이었던 몇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 <사례1>

손윤규 • 전북 부안 백산면 출신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백산중학교 교사로 근무-48년 남로당 부안군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 징역 8월. 불젓가락으로 지저 댄 흔적이 하복부에 있었다. 전쟁 때 입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53년 체포, 사형수로서 7년을 살다 4.19혁명 뒤 무기로 감형- 혼자 수학, 물리학 등 공부도 했다.

• 1976년 3월 윤희보씨가 전담반에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하고 왔고 다음날 손윤규씨가 또 불려갔다. 박광조 전담관에 의해 무수히 구타당하고 코피를 흘리며 돌아왔다. 각사방에선 불법 구타에 항의, 단식에 들어갔다. 손윤규씨는 위질환 등 너무 몸이 약해 동료들이 그만둘 것을 권유할 정도였다. 단식 6일만에(8일이라는 증인도 있음) 의무과로 옮겨가 공작반 진정교도관이 호수를 콧아 강제급식하는 중 사망했다. 최하중, 서승씨 등 감방동지들이 항의단식하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소장사과, 전향공작 중단을 요구했다(徐勝- '獄中 19年' 외 여러분 증인).

#### <사례2>

김규호 • 전남, 강진 출신 경도체대 철학과 졸업. 평양에서 농민신문 주필, 교수 등 역임. 1950년 일본에서 공작원 혐의로 체포. 오무라 수용소 거쳐 남한으로 이송-심한 위장질환으로 약이 없으면 하루도 못 견디었음.

• 몸이 약한 점을 전향공작으로 악용. 약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이 넣어준 약도 압수-전향을 해야 주겠다고 매일 불려다니며 고문당했다. 전향공작반에서는 김규호씨가 이론이 밝은 지식인이고 인격적으로 감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을 겨냥, 어떻게든 전향을 시켜 다른 사람 전향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집중공작을 했다. 1976년 6월 28일 아침에 업혀나가 저녁때 초죽음이 되어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업혀왔다. 다음날 아침 점검시간에 창틀에 목매있는 것을 발견, 급히 병사로 옮겨왔으나 숨졌다고 한다. 광주교도소였다.

(장기복역양심수 실태자료-민가협) (옥중일월-김도한)외 여러분 증인

#### <사례3>

박윤서 • 경기도 연천(또는 포천설) 출신으로 해방후 정치활동하다가 48년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함. 전쟁때 북으로 갔다가 정치공작원으로 내려와 체포.

1976년 대전교도소에서 어느날 가지고 있는 약품의 종류와 개수를 등록하라하여 빈혈약 해

모글로빈 150정을 등록했는데 다음날 사방청소(홍악범 이돈웅)가 '어제 200정을 등록했는데 50정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며 억지까탈을 잡은 후 이것을 구실로 사방팔당 간수 김진태와 무차별 구타하고 1cm정도만 몸속에 들어가도록 실로 동여맨 바늘로 전신을 찌르는 고문 등 온갖 고문을 자행.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장기복역양심수 실태자료- 민가협) 외 여러분 증인

#### <사례4>

최한석 • 경북 상주 출신. 일본음악학교 졸업. 피아니스트, 원산에서 성악가와 결혼, 함남 최신부 간부. 정치공작원으로 내려와 57년에 체포. 무기선고받고 복역.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생.

• 매일같이 전향공작이 이어지던 1976년 5월 어느날, 약을 청구했으나 간수가 '너는 간첩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며 비아냥댔다. 최한석씨가 "내가 북에서 내려온 것은 내고향 상주를 찾아 외세를 몰아내고 부모형제와 함께 통일날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함이다. 내가 간첩이라면 남과 북은 적대국이고 한민족 한조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너도 통일을 위한다면 네머리속에 있는 그 반공사상부터 씻어내라"고 말하기도 전에 방문을 열고 북도로 질질 끌려간 후 한참 후 초죽음이 되어 소지에게 업혀왔다. 이려고 매일 끌려나가 구타당하고 업혀오고 했다. 5. 15. 비명소리와 몸부림치는 소리가 나서 옆방사람이 담담을 불렀으나 1시간이나 지난 다음 의무과 직원이 왔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위 민가협 자료, 옥중일월, 김도한)

#### <사례5>

이용훈 • 충북 옥천출신 서울법전 일본와세다대학-전쟁 때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옴. 원양어업 회사근무. 체포. 지식인이어서 더욱 가혹한 전향공작 대상이 되었음. 전향공작을 위해 정신병자와 함께 독방에 감금했는데 1주일만에 정신병자가 이용훈씨의 도덕적 품모에 감화되었다는 일화도 있음. 85년 전향공작반의 테러가 계속될 때 어느날 피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고문을 당하고 "이대로 맞아 죽느니 항거하여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고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남은 동지들이 내뿜까지 싸우시오"라는 유언을 독방에 남기고 대전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교도소에는 1984년 10월 전국의 비전향장기수를 모두 집결시켰고 새로 부임한 배웅한소장은 사발할 것과 운동시간을 줄일 것 등을 지시했고, 장기수들은 이에 항의 단식으로 맞섰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70이 넘는 사람까지 지하실로 끌어다 집단구타 강제급식을 했고 18사, 20사, 징벌사, 6사 등으로 분산 수용시켰다. 이때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일본 법정대학을 나오고 강원도 국영농장지배인, 빨치산활동을 했던 이용훈씨와 절친했던 황필구씨도 1주일 후 자결했다. (위 민가협자료. 한기해, 국가보안법)

#### <사례6>

김용성 • 경북예천 출신. 일본중앙대 졸업. 해방 후 당간부. 전쟁때 북으로 고급중학교장. 황해도 은율군 교육부장. 정치공작으로 남쪽에. 15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감호소에 수감.

• 1980. 7. 7. 책제한문제로 서준식씨와 교도소측이 충돌하며 동행을 거부하자 교도관 10여 명이 물려와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황용갑씨가 문밖을 차며 항의하자 황용갑씨를 지하실로 끌고가 감호과장 오기수로부터 잔혹한 고문을 당함. 이에 감호자들이 황용갑씨의 수갑과 결박을 풀고 원래의 방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감. - 7. 11. 이들을 모두 분산독거케 하고 13일부터 강제급식하였음. 이때 김용성씨와 황해도 봉산출신 변형만씨, 김규찬씨 등이 사망했음.(위 민가협자료. 여러분 증인)

<사례7>

배학수 • 경북 영천. 1974년 사망. 제국대학 경제학부. 항일운동. 해방 뒤 10. 1. 항쟁 때 수배. 북으로 감. 안악군 조선민주당위원장. 함남도당 책임자. 전쟁때 내려와 후퇴때 잡힘. 무기. 병보석으로 다시 체포. 무기 받음.

<사례8>

최재필 • 전라북도 출신. 이리농림학교. 광주학생의거 때 이리농림 조직책으로 3년 징역. 해방된 뒤부터 북쪽에. 함경남도 도당학교장. 강원도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공작으로 남쪽에.

• 1987년 3월 하순 대전교도소. 병사(病舍)에 옮김. 위암으로 병사. 죽어가는 사람 손을 끌어다 전향서에 강제 모인케 했다 함.(옥중일월. 김도한. 여러분 증인)

• 유종흠 교회사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함. - 그 뒤 정신질환을 앓게 됨. - 그 후유증으로 병사 (여러분 증인)

위와 같은 몇가지 사례만으로도 사상전향을 강제하면서 자행된 반인간적 고문의 잔혹함을 보게 되었다. 강제로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삶의 의지를 꺾는 행위이다. 고문의 범죄성은 이미 온세계가 공명했고 그 방지를 위해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금지조약」을 유엔총회에서 결의 채택한 바 있다.(1984. 12. 10) 고문에 의한 직접 희생이 아니더라도 비전향자라 하여 장기구금하며 반인간적 처우로 각종 질병을 앓게 하고 끝내 숨지게 한 행위도 명백한 범죄이다. 이같은 야만적 행위는 바로 그만두어야 하고 희생자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고문행위자는 시효없이 처벌해야 한다),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이제까지 옥중희생자의 범주(청탁 주체 대로)와 그 사례를 사법처형 희생과 옥중에서의 부당한 행위로 희생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옥중희생자문제의 명예회복이 이 학술회의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그것은 지난 1세기동안 우리 민족에게 지워졌던 역사적 조건을 얼마나 슬기롭게(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맞게) 대처했는가 하는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러한 반성의 현

재적 과제를 얼마나 옹기 이루어 내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 첫 째 일은, 참민주주의 실현과 국민기본권 보장이다. 민주적 절차로 결성된 학생단체의 출범식마저 못하게 하는 현실을 의면하고선, 바로 눈앞에 반민주적 요소를 두고선 지난 잘못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결이다. 가행자와 피해자로 하여 승자와 패자로 귀결하려한다면 그것은 끝없는 비극의 연속일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였던 사람이 바로 잡혔던 나라의 대사로 가고 있다. 적과 동지는 영원할 수 없다. 하물며 민족끼리 화해를 못할 이유가 없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 정신을 옹기 살려야 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감옥에서의 희생자 문제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반민족 악법폐기와 지금 간혀있는 장기복역 양심수의 석방으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40년을 간혀있고 80이 다 된 이들을 붙잡아 매두는 최소한의 인도주의마저 의면된 상태에서 지난 일들이 풀어질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옥중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재심청구(인혁당재건위 경우)와 고문 등 잔혹행위를 밝히기 위한 공정성을 갖춘 「진상조사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옥중희생자 문제를 다루기에는 발제자의 능력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다 전문적인 법조계와 학계의 연구가 있게 되길 기대한다.

#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방향

김순태(방송대교수, 법학과)

### I. 입법의 목적

과거청산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쟁점은 객관적 史實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그것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즉 '그 당시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는 몰랐다' 또는 '그 당시에 알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잊었다'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그런 과거의 기억을 되새길 계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두웠던 껍데기를 벗어 버리는 것이 좋다는 무의식적이지만 의도적인 망각의 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것이다.

군부독재에 맞서 분신했던 민족민주열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분신이라는 수단을 택했는지 보다는 '어둠의 무리'라는 박홍 신부의 말이 더욱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반공이데올로기에 물든 언론의 방조가 기여했겠지만.

### II. 입법의 형식: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발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열사들에 대하여 (가칭) 민주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로는 적절치 않다. 가칭 '민주유공자들의 정신계승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목의 입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단 '민주유공자'의 지정과 그에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할 민간 합동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작업들에 대한 원칙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보장,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출연·보조 등, 조세감면 등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원책 이상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계승의 내용과 관련해서는—발제문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우선 진상규명의 문제이다. 이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공인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 기초해 분석하고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지정과 그에 따른 제반 법적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민주유공자들이 무엇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진전했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간행물로 공간하고 이를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후세들의 교육자료로 삼아야 한다. 다만 발제에서 제시한 국정교과서의 수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여 다양한 교과서가 각급 학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열사들의 역사적 행위를 기록한 교재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예컨대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족민주열사들과 관련된 장소의 보존과 그에 대한 기념표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발제에서 제시한 모든 열사들에 대한 기념일 지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는 의심스럽지만 일정한 날에 기념식 및 추모식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 박물관을 건립하여 민주화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사료들을 모아 전시하고 교육한다면 단순한 기념일 지정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배상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고통, 정서적 충격 등 모든 신체적·정신적 손해, 교육기회 등 모든 기회의 상실, 소득기회 상실 등 모든 물질적 손해 및 소득 상실, 평판이나 명예에 대한 훼손, 변호사비용, 평가비용 등 모든 법률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유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의료보호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 III. 맺음말

이러한 입법방향은 기본적으로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작업들은 과거청산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18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서 보듯,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 없이 사면을 전제로 한 정치적 술수로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단지 법정기념일 제정 또는 묘역의 단장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과거청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없는가? 5·18 법정기념일, '국가유공자'?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다. 진상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들이 마련될 때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에 터잡아 미래의 정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민주화투쟁과정에서 헌신한 열사들의 정신계승은 그분들이 투쟁했던 대상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것의 청산을 위하여 반민주적 정권과 그것을 호위하는 각종 악법과 제도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화를 이루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 민족민주열사 주장의 정당성

손호철(서강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1. 그동안 군사독재가, 거기에다가 소위 문민정부까지 가세하여 양산한 민족민주열사는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민족민주운동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과 또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여론과 시대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서 분신, 투신 등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열사들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과 관련해 아주 주목할만한 한 한국적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그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두 번째 유형은 기껏해야 50년대 부패한 월남정권에 저항한 일부 승려들의 분신 이외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즉 이는 간디의 비저항운동과도 구별되는, 한 차원 높은 정말 처절한 저항운동이다. 이같은 우리만의 특징은 극우반공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분단구조가 강제한 결과로서 투쟁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테러리즘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적 방식이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낳은 처절한 자기희생적인 투쟁방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2년전 김영삼정권은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과거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신, 5·6공의 군사독재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60년대 이후의 한국현대사에 대한 왜곡이 정부차원에서 어느 정도 바로잡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극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우리의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나마 그런대로 가능케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한 이들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은 시급한 과제이다.

3. 75년 유신체제에 저항해 할복자살한 김상진열사를 시발점으로 생겨난 우리 사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는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정권하에서 생겨난 58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그 희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내지 주장이 분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이중 분명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들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볼 수밖에 없다.

4. 민족민주열사들의 주장은 크게 보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주요한 한 부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유신독재, 5·6공 등 군사독재정권의 타도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갈구하는 주장들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헌법에 국시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하고 처절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정권을 내란에 의한 정권으로 대법원까지 판결한 이상 이들의 타도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친 주장들은 분연히 내란에 맞선 분연한 애국적 행동으로서 훈장을 주어야 마땅하다.

5.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상으로 그 수에 있어서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정에서 처절한 방식을 택하여 주장했던 주장들이다. 이들의 주장 역시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3권 보장, 부당 해고 철회, 3자개입 금지 철회, 어용노조 퇴진 및 민주노조 건설 등 정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반민주적인 대표적인 악법으로 평판이 높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나아가 문민정부가 계승한 노동법을 기준으로 할 때에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은 노동현실에 대한 고발이거나 제 3자개입과 같이 국제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때나 당연히 철폐되어야 할 반민주적인 노동규범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들이었다.

6. 이밖에 대학생 열사들이 제기한 교육민주화요구와 다양한 우리 사회의 소외세력이 제기한 생존권요구들 역시 주목할 주장들이다. 대학을 완전히 노예화시키기 위한 전두환정권의 학원안정법제정에 반대한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교조투쟁, 사학비리와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반민주적인 대학운영에 저항한 학원자주화투쟁, 교육환경개선 요구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의 요구들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단순히 선거와 국가권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중에서도 미래의 주인들을 만들어내는 교육현장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장들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현대사회가 단순한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며 살 생존권, 즉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살농정책에 대한 정항으로부터 노점상, 장애인, 판자촌 주민 등 우리사회의 소외세력 열사들의 생존권 요구들은 이같은 요구들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고 이의 요구를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치부들이자 인간이라면 당연히 제기해야 할 정당하기 이를 데 없는 요구들이다.

7. 마지막으로 반미자주화와 통일관련 주장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80년 5월 광주는 반미의 불모지대인 우리 사회에 반미자주화투쟁들을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열사들을 배태시켰다. 또 이같은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단현실과 관련하여 통일운동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해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던져야 했다. 이같은 반미자주화와 통일문제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는 달리 분단에 따른 우리사회의 반복, 반공주의와 관련해 이들 열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어렵게